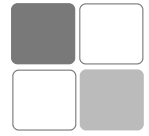


# 목 차



**1.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과 사례 ..... 1**

김철홍(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과장)

**2. 개정 사회과교육과 인권 ..... 21**

구정화(경인교육대학교 교수)

**3. 도덕 교과서의 인권 내용 구성 방안 ..... 37**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수학습연구본부 본부장)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관련 통계 및 자료 .... 67**



# 1

##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과 사례

김 철 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과장)



# 교과서 집필기준과 사례

김 철 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 교과서란?

- “학생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다”
- “교육과정의 내용이 재현되는 도구이다”

## 교과서의 구성요소

- 본문(내용+ 형식)과 삽화
- 본문은 ‘집필자에 의해 선택된 내용’과 ‘내용을 제시하는 형식’의 결합





# 인권적 관점에서 교과서 보기

## 인권친화적(Friendly Human Rights)란?

- 인권을 지향하는 것
- 인권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내용을 구성하거나 삽화를 구성한다.

반인권적 교과서  
(anti-Human Rights)

무인권적 교과서  
(null-Human Rights)

인권친화적인 교과서란 교과서 전체 내용의 선정과 구성 방식에서 반인권적이거나 무인권적이지 않고 친인권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과서

# 고려해야 할 인권적 관점



영역		인권적 관점
내용 구성	내용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존엄의 가치를 담고 있는가?</li> <li>-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 등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가?</li> <li>- 인권에 대한 협약이나 제도를 중요하게 다루는가?</li> <li>- 우리사회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는가?</li> <li>- 인권 내용을 다룰 때 인권 침해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인권 내용을 다룰 때 학생 수준에서 경험하는 인권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는가?</li> <li>- 인권의 다양한 목록을 충분히 고려하는가?</li> <li>-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견지하는가?</li> </ul>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내용을 다룰 때 학생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가?</li> <li>- 인권에 관하여 문제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인권에 관하여 학생들 간에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참여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가?</li> <li>- 관례화된 반인권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가?</li> <li>- 소수집단을 비하하는 용어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는가?</li> </ul>

## 고려해야 할 인권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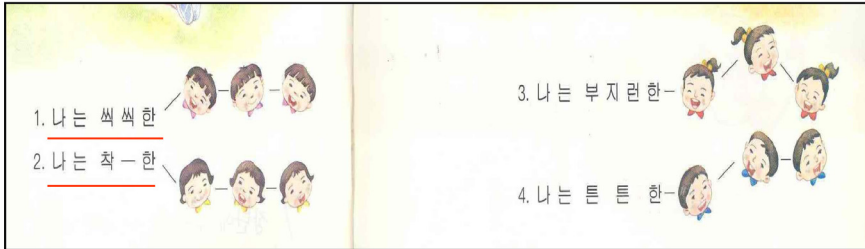


서술과 삽화 제시 방식	포괄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현상에 대하여 인권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li> <li>-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가?</li> <li>-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회적 현상을 서술하고 있는가?</li> <li>-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li> <li>-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가?</li> <li>- 사회 주류적 관점만 다루어서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가?</li> <li>- 전 지구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li> </ul>
	세부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내용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가?</li> <li>-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li> <li>-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이나 역할 모델로 나타낼 때 현저히 적은 비율로 등장하지 않는가?</li> <li>- 종교를 다루는 내용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는가?</li> </ul>

## 교과서 집필시 유의점 : 내용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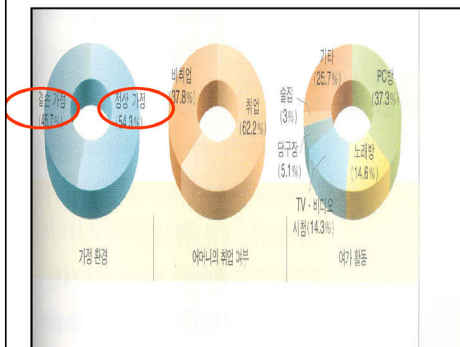


- ✓ 첫째,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용어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남녀차별적 용어  
예) 퀴리부인, 여자 운전사, 남자 미용사, 처녀비행 등
  - 장애에 대한 차별적 용어 예) 장애인과 정상인, 봉사, 맹인 등
  - 인종차별적 용어 예) 흑인, 백인
  - 직업에 따른 차별적 용어 사용 예) 가정부, 장사꾼



△ 구 교과서 슬기로운 생활(4~5P)

- 남성은 ‘씩씩한’ ‘튼튼한’, 여성은 ‘착한’ ‘부지런한’ 고정적인 남성, 여성관을 드러냄으로써 성차별적 요소



△ 고등 사회(⊗ 출판사 249p)  
- 결손가정 VS 정상가정

**탐구 활동** | 개인의 권리와 공익

집 근처에 장애인 학교가 생기지 못하도록 소송을 낸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는 남비(NIMBY) 현상에 제기를 막은 셈이다.

장애인이수록 정상인보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장애인의 70% 이상이 의무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턱없이 부족한 교육 시설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 학교는 물론이고, 값비싼 민간 기관에 들어가는 데도 한심씩 기다려야 한다. 더 이상 장애인 교육 기관의 설립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민과 지방 자치 단체의 반대 때문에 제때 설립이 안 되는 실정이다.

과제1 이러한 남비 현상의 사례를 찾아서 서로 대립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과제2 자신이 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 학교 설립 반대에 대한 항의문을 작성해 보자.

△ 고등 사회(⊗ 출판사 267p)  
- 장애인 VS 정상인



## 교과서 집필시 유의점 : 내용 서술



- ✓ 둘째 고정관념에 따른 정형화된 내용의 기술을 하지 않는다
  - 성차별적 서술: 가정 일은 주로 여자, 바깥일은 주로 남자의 일, 여성을 소비를 담당하면서, 과소비의 주체로 서술하는 경우
  - 민족이나 인종차별적 서술: 원주민 문화를 미개문화로, 미개 문화를 식인문화로 소개하는 경우
  - 정상과 비정상의 분류에 따른 서술: 혼인을 한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만 정상인 것 처럼 서술하는 경우

의 경우에 어른들은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에게 는 옷놀이, 방놀이, 실뜨기 등 고유한 민속 놀이와 배워야 할 전통 문화가 많다. 이러한 기회를 조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절을 배우며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음식 준비, 손님맞이 등으로 고생하는 여자들을 배려하여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건전한 명절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 명절문화의 개선을 소개
- '아울러 음식 준비 손님맞이 등으로 고생하는 여자들을 배려하여 역할을 나누고'라고 하여, 명절 손님맞이, 음식준비는 여성의 몫임을 가정하고 있는 관점을 드러냄(성차별적 서술)

△ 중등 도덕3(151p)

## 교과서 집필시 유의점 : 내용 서술



- ✓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술에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 장애인과 노숙자 인권을 다루면서 ‘보호’ 나 ‘배려’를 강조하는 경우
  - 사회적 약자의 문제나 상황에 있어 그 원인이 사회적 약자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다는 일방적 관점의 표현

선택 활동 ④ 카드놀이를 해 봅시다.

### 놀이 방법

우리 주변이나 세계의 불행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어 온 카드를 모음별로 모아 토의하고, 실제로 실천해 봅시다.

카드 1. 국내외 지도자에게 지역이나 세계 문제에 대해 호소하는 편지 쓰기  
(예 : 대동령에 '어려운 소녀 가장을 도와 주세요'라는 편지 쓰기, 신문사나 방송사에 편지 쓰기)

카드 2.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기(고아, 장애인, 노인 돕기)

카드 3. 지역의 환경 보호에 참여하기(거리 청소, 나무심기)

카드 4.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금 모으기에 참여하기(홍문 이끼쓰기)



△ 초등 도덕6 (163p)

•세계의 불행한 어린이를 돕도록 학습하는 내용

•세계의 불행한 어린이 범위에 하단 소녀가장, 고아, 장애아 등이 포함

•이는 ‘장애=불행한 어린이’ ‘고아=불행’ 라는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며, 사회적 약자와의 지속적 관계형성보다는 ‘보호’나 ‘배려’를 강조하고 있음



## 교과서 집필시 유의점 : 내용 서술



- ✓ 넷째, 사회적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담아내야 한다.
  - 사회갈등 과정에서 대립되는 집단들을 대등하게 다루기보다 한 집단의 입장일 경우
  - 하나의 집단이나 입장이 일방적인 가해자나 문제 유발자로 서술되는 경우
  - 서술내용에서 다른 한 관점이나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고정 관념이나 차별을 갖도록 하는 경우



△ 시민윤리(교과부 20p)

-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공공도서관 건립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에 해당되며,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핍피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부에서 ‘그린벨트 조정안’을 발표 하자.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 1200여 명은 ‘전면 해제’를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를 저지하는 등 큰 소란을 피웠다. 그 결과로 공청회는 40여분 동안 지연되었다. 한편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방침에 반발하여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환경조건을 주장하고 나왔다.”

- 중등 도덕2학년(61~62p)

사례1. 이문동 차량 기지 건설공사  
철도청이 1997년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국유지에 전동차 1천여 대를 고칠 수 있는 차량기지를 건설하려 하자 이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중략) 철도청 관계자들은 2년간 주민과 동대문구청, 구의회측과 81차례나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려 노력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문제해결은 쉽지 않았다. 철도청측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건설부지로 책정된 토지의 일부를 동대문구 내의 학교와 공원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많은 보상을 들이 고서야 반대 운동은 잠잠해졌다

- 중3 사회 (↵ 출판사 105p)

• 집단갈등사례 서술에 있어 양 집단을 대등하게 기술하기보다, 한 집단의 입장을 우세하게, 혹은 다른 입장은 부당한 행동이라는 관점하에 기술함

탐구 활동



●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민주 시민의 역할을 알아본다.

인기 가수가 출연할 때면, 방송국 녹화장의 정문 앞에는 중·고등 학생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입장이 시작되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이다. 질서나 양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경비원에게 험한 말을 하기도 한다.

녹화장 안의 풍경은 더 가관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피성을 지르며 이성을 잃은 듯이 흥분하다가, 다른 가수가 나오면 아우를 보내거나 아예 나가 버리기까지 한다.

이를 두고 어른들은 무서운 10대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10대에겐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가? 자유 분방한 10대, 개성 위주의 10대, 뭐든 것이 아름답다'는 구호도 원칙과 기준이 없이 마구 외쳐대는 뻔뻔스런 10대의 공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1999년 5월 31일, ○○ 일보-

과 제 1 윗글에 나타난 10대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과 제 2 윗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



자료 1-18 방송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

중2 사회 (↵ 출판사 143p)



• 민주시민의 역할을 학습하는 가운데, 10대들의 공연문화에 대한 신문기사

• 10대들을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 유발자로만 바라 보는 관점이 내재해있음

• 특히 사용된 어휘 중 ‘더 가관이다’ ‘뻔뻔스런~’ 등은 부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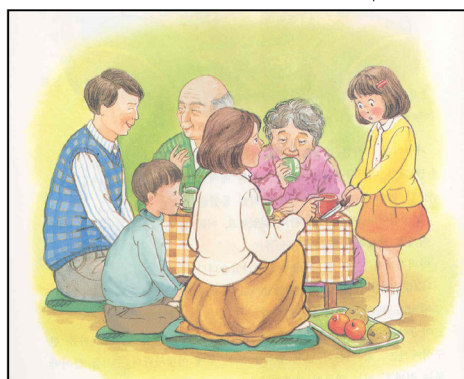


## 교과서 집필시 유의점 :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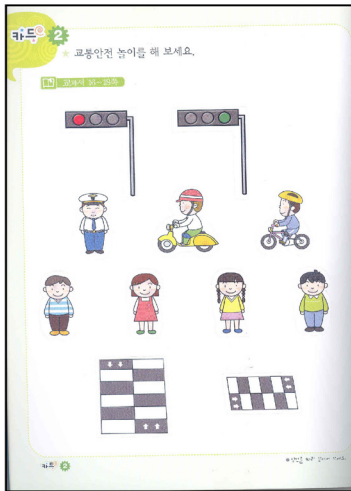
- ✓ 첫째, 고정관념에 따라 삽화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 여자만 집안 일하는 모습
  - 영어 단어를 제시하면서 남녀를 차별하여 그린 모습  
예) 의사(a doctor)는 남자, 간호사(a nurse)는 여자
  - 여성이나 여아를 집안일이나 비역동적인 놀이 예, 남아는 축구, 여아는 공기놀이)
  - 중요하거나 고위직 등의 직업이나 직종은 남성 중심
  
- ✓ 둘째, 삶의 다양성이 드러나도록 그려져야 한다.
  - 외국인을 그릴 때 긍정적인 모습에는 유럽계 외국인, 부정적 모습에는 아프리카계 외국인
  - 놀이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장애인을 넣지 않은 모습
  - 학생들끼리 조사나 토론을 하는 활동에서 국제결혼2세대 자녀나 장애인 전혀 없는 모습



△ 구 교과서 즐거운 생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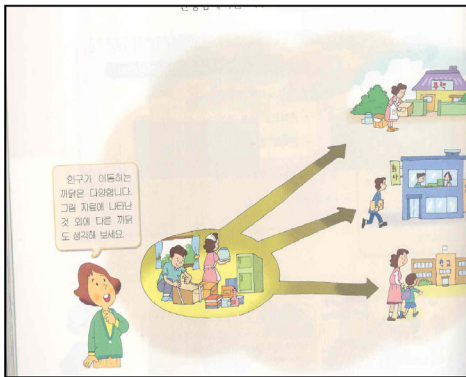
△ 초등 도덕4-1(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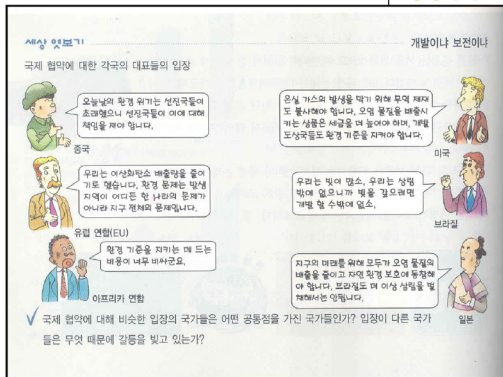
△ 슬기로운 생활 1-1(카드)  
-여성은 차마, 남성은 바지  
직업군은 모두 남자



△ 6학년 영어 7단원 직업카드  
-의사, 조종사, 경찰은 남성,  
-교사, 간호사는 여성



△ 초등 사회5-1(62p)  
-남성은 일, 생산에 종사하는 반면  
여성은 가사, 양육 전담



△ 고등 사회(교과서 108p)  
- 국제협약에 대한 소개는 좋으나 각국  
대표는 남성으로만 구성



## 교과서 집필시 유의점 : 내용 구성 시

- ✓ 첫째, 사례 발표 활동에서 학습자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 ✓ 둘째, 주어진 사건이나 사회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보도록 구성한다
- ✓ 셋째,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함께 하기 4 우리 가족은 얼마나 건강한가?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가족과 일치하는 정도를 1~5 중 알맞은 번호에 V표를 해 보자.  
그리하여 각 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합계를 통해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같이 한다.	1	2	3	4	5
2. 서로를 신뢰하며 현신적이다.	1	2	3	4	5
3. 가족들이 자주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며,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긍정적인 의사 소통을 한다.	1	2	3	4	5
4. 가족의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1	2	3	4	5
5.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1	2	3	4	5
6. 부부 관계가 친밀하다.	1	2	3	4	5
7. 부모 자녀 관계가 친밀하다.	1	2	3	4	5
8.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 준다.	1	2	3	4	5
9. 부모는 자녀가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 준다.	1	2	3	4	5

△중등 도덕3(143p)

•우리 가족의 건강지수를 체크해보는 내용이나, 항목 중 ‘부부관계가 친밀하다’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라는 항목 삽입


•최근 늘어나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답변할 수 없는 항목

•‘한 부모 가정=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될 소지가 높음



선진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소비 형태는 크게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럽형 소비 형태는 오래 된 가구나 식기 또는 가죽 등에서 보듯이, 비교적 낮은 지출로 검소한 소비를 하는 것이 특색이다. 반면에 미국형의 소비 형태는 자동차, 모터보트 등이 상징하듯이, 고소득에 고소비를 하는 것이 특색이다. 우리나라의 소비 형태는 미국형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마치 기초는 부실한데 외양만 그럴듯한 건물을 짓는 위험한 공사와 같다고 하겠다.



- 소비형태를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구분하여 “미국형은 고소득, 고소비”, “유럽형은 낮고 검소한 소비”로 구분
- 소비형태는 국가형태이기보다 소득수준별, 개인별 다양할 수 있음에도 소비형태를 일반화하여 자칫 미국과 유럽에 대한 편견 초래

△ 중등 도덕2(12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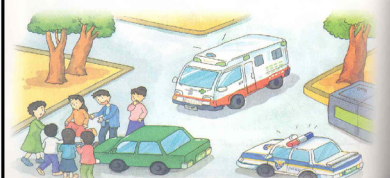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법과 규율을 잘 지키려는 마음을 다져 줍시다.

모두가 교통법규구나

“개떡!”  
귀를 찔러 놓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위적 사이렌이 크게 울려서 눈앞에 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고, 또 사고났구나!”  
창문을 열고 사고가 난 쪽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이렌을 울리며 119 구급차가 오고 경찰차도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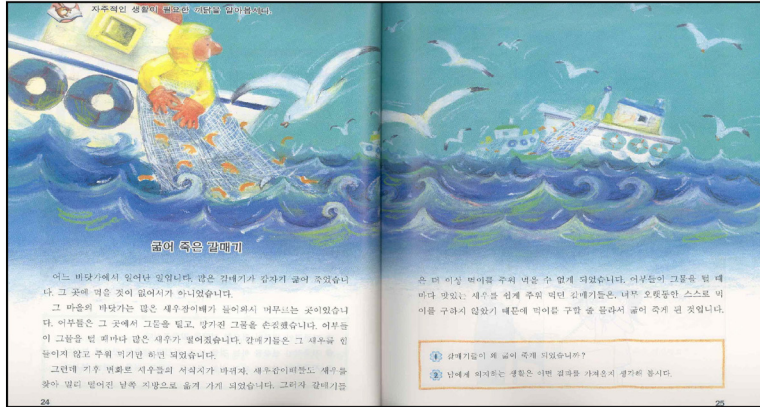
그 때, ‘당동’ 하고 소란을 소리가 들었습니다. 제우이는 어머니를 확인하고 울을 떨어 드렸습니다.  
“제우야, 집에 있었구나. 아이고! 가슴 아프다.”  
일곱이 울먹대길 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쓸어 내리더니, 제우이를 포옹 하면서 안아 주셨습니다.  
“제우야 너만 한 남자 아이 누가 그런 단의 병으로 심어 갔다네. 일곱을 많이 다쳐서 누구내 몸 아픈지 알 수가 없더는구나. 잘라서 봐오는데, 다리가 떨어져 갈 줄은 수도 알고 알고 볼 만 나오리라. 부모를 타고 내려오다 열일에서 팔팔하게 달려나오던 귀에 치였더는구나. 누구래 아이일까?”  
어머니께서 한 한숨을 내쉬면서 부엌 쪽으로 향하시는데, 소란장이 울렸습다.  
“일곱 경찰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경찰이 아끼 안 왔습니까?”  
경찰이 어머니는 경찰이도 안 보이고 빅보도도 안 보였더라 울먹대길 일곱이 울다가 왔습니다.  
제우이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관례들이 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께서는 일곱이 깨워주셨습니다.  
“제우야, 관례집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가 경찰이러는구나!”  
어머니께서는 슬피 나가시더니, 잠시 후에 경찰이 이등재 경찰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우야, 가까운 병원 중환실에 있더라네. 길어 가 보자.”  
“왜 그만대 경찰이도 같이 가나요?”  
“당해 가이요.”  
경찰이는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경찰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누구 많이 다쳐서 의사 선생님이도 걱정이에요.”  
경찰이 어머니는 평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 초등 도덕6(74~75p)

- 위 예화는 교통사고를 빚대어 ‘모두가 교통스러운 상황’이기에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너무나 극단적이고 끔찍한 상황설정으로 학습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라도, 교육작용이 이뤄지는 교육환경이 인권적이어야 한다는 상황과 원칙에는 반하는 사례(인권을 통한 교육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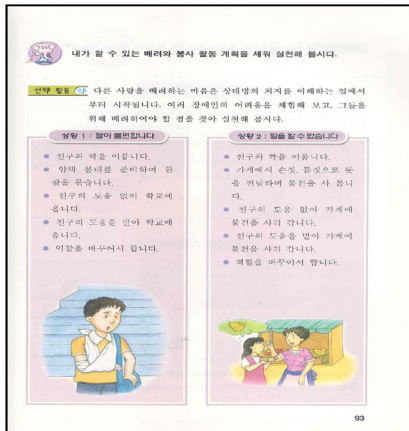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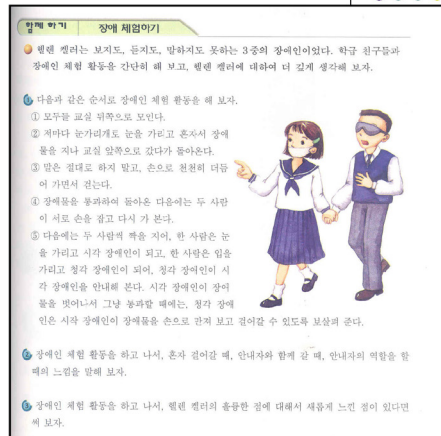
△ 도덕4-(24~25p)

‘자주적 생활이 필요한 까닭을 알아봅시다’의 예화로 쉽게 먹이를 찾다가 결국엔 굵어 죽은 갈매기를 예화로 제시하고 있으나, 극단적 상황의 예시를 통해 교육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반인권적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예화라고 보기 어려움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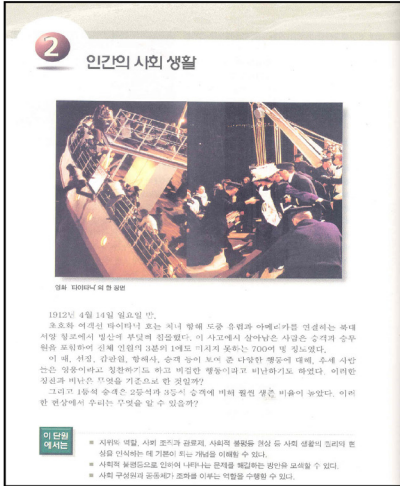
△ 도덕6(93p)



△ 중등 도덕1(교과부 151p)

- 매 학년마다, 매 과목마다 동일한 형태로 장애체험 교육은 반복되고 있음
- 장애체험은 장애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의 불합리함을 체험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며, 학년이 올라갈 수록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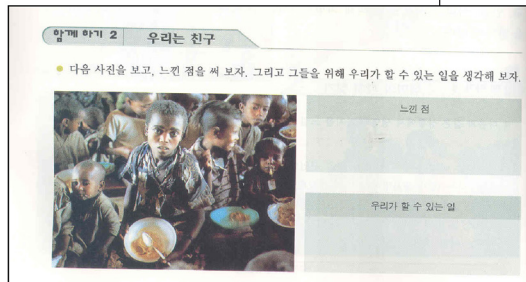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통해 사회적 불평 등의 불합리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과사의 사례를 통한 학습은 적절한 예화로 보기 어려움
- '1등석 승객은 2등석과 3등석 승객에 비해 훨씬 생존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는 불평등을 인지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수긍하고,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음

△중등 사회2( **저** 출판사 156p)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 고등 도덕(80p)  
 - 도덕공동체로 소개되고 있는 사진이나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모습의 사진으로 도덕공동체라고 보기 어려운 사진임

△중등 도덕2( 58p)

-함께 하기 '우리의 친구'  
 위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적게 하는 학습 내용이나 '친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기에 어려운 사진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 슬기로운 생활1-1

- 일반적인 가정을 넘어 최근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가정 형태를 담고 있는 사례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 읽기 6학년 2학기 2단원 더 나아가기 ‘인권과 가치’

<p>서술 내용</p>	<p>‘생명’,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평화’, ‘자연과 조화’로 나누어 인권을 설명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인권 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다르니까?”는 문제를 제시하고 다음의 선택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방문하기, 아동 인권 선언문을 찾아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기,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조사해보기, 인권과 가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학급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해 보기’</p>
<p>인권적인 이유</p>	<p>- ‘차이와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움 - 아동인권선언문을 내용요소로 다루고 있음</p>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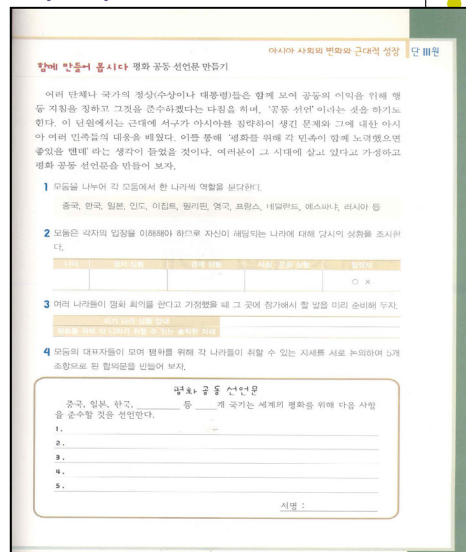
과학 1학년(ㄱ) 교과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서술 내용	이 단원에서는 중추신경계인 뇌의 역할을 배운다. 뇌의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 치매환자의 증상과 그 가족이 해야 할 일 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치매는 정신병과는 달리 뇌의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며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종종 이러한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인권적인 이유	- 치매환자를 정신병에 걸린 격리 수용해야 하는 존재로 오인하도록 하여 기피하거나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 동일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측면이 반영됨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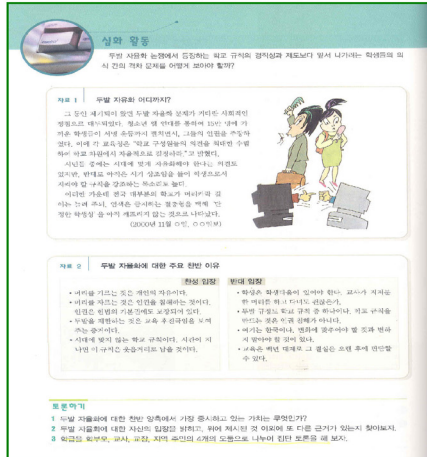
- '평화공동선언문' 작성을 통한 평화와 인권교육 시도



△ 중등 사회2 ( ㄱ 출판사 93p)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 중등 사회2(ㄱ 출판사 142p)

- 두발자유화라는 학생들의 일상 학교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택하여 학부모, 교사, 교장, 지역주민, 학생 등 집단들의 각 입장을 생각해 보고 토론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사회권 조약 등 국제인권에 대한 언급으로서 국제 인권 내용을 기술
- 자유권,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것이 아쉬움

**참구 활동**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연도	사회권 조약 비준국 (ICESCR)	자유권 조약 비준국 (ICCPR)
1970	11	11
1980	65	64
1990	97	91
2001 (연도)	153	152

현대에 들어 시민들은 제 1·2차 세계 대전 중에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세계 인권 선언(1948)이 발표되었고, 뒤이어 각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약속인 사회권 조약(1966)과 자유권 조약(1966)에 비준하였다. 이처럼 현재 많은 국가들은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인권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다.

1.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배경을 조사해 보자.
2. 위 표에서 국제 조약에 비준한 국가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찾아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조사해 보자.

△ 중등 사회3(ㄷ 출판사 10p)



# 사례를 통해 본 교과서

우리 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의 권리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나라는 소비자의 권리 관리를 소비자 기본법에 명문화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리로 주장할 수 있게 하였다.

<p><b>1</b></p> <p>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재산상의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안전할 권리)</p>	<p><b>2</b></p> <p>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것의 종류, 양, 가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p>
<p><b>3</b></p> <p>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택할 권리)</p>	<p><b>4</b></p> <p>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단체의 직간접 행위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p>
<p><b>5</b></p> <p>재화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상을 받을 권리)</p>	<p><b>6</b></p> <p>음품 및 서비스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p>
<p><b>7</b></p> <p>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단체를 조직 및 활동할 권리)</p>	<p><b>8</b></p> <p>소비자는 안전한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p>

- 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개
- 소비자 권리를 알기 쉽게 잘 소개하고 있으나, 여성 캐릭터만 사용하고 있어 ‘여성=소비주체’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아쉬움

△중등 사회3 ( 7 교과서 61p)

# 2

## 개정 사회과교육과 인권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개정 사회과교육과 인권

구정화(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은 각자가 가진 시각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의 발달과 확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매 시대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 현실이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하여 저항한 몸짓의 결과로 인류는 역사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인류가 누리는 그나마 인권적인 삶이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인류의 삶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유용한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인권’이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인권은 몇몇 교과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고려하는 사회 교과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측면에서 교육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문에서 ‘인권’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2009년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논의되었던 인권 관련 교과 내용의 구성이 다소 재편집되는 과정을 겪는 등 ‘인권’ 관련 내용요소의 조직과 내용의 정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내용 요소에서 ‘인권’이 어떻게 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권교육 측면에서 유용한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특히 현재 개발된 초등학교 및 중 1 교과서 내용을 제외한 몇 가지 학년에서 ‘인권’ 영역이 어떻게 담겨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해 보려고 한다.



## 개정 사회과교육과정과 인권

### 1. 인권교육의 이해와 교과서

#### 1) '인권에 대한 교육' 과 교과서

- 인권에 대한 교육 : 인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인권의 역사, 인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만들어진 역사적 문건들, 인권 관련 정책 등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와 권리 침해에 대해 이해하며, 이와 관련한 인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 교과서의 내용 구성
  - 인권의 의미와 역사, 발달 과정
  - 인권의 세부 목록
  - 인권 관련 기구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언급하는 교과서

#### 2) '인권을 위한 교육' 과 교과서

- 인권을 위한 교육 : 실제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인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관점을 적용하도록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가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사회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어떤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 등을 만났을 때 인권을 어떻게 적용하고 바라보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관계와 사고능력을 어떻게 하고, 인권단체와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기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 교과서 내용 구성
  - 인권적 민감성을 다루는 상황
  - 일상의 사건에서 인권적 상황을 제시함

- 일상에서의 친인권적 활동의 중요성 등을 서술함
- 가능한 쟁점 중심으로 다루어 사건 안에 담긴 권리의 충돌을 담아 냄
- 인권 문제를 제시하고 사고 할 수 있도록 함

### 3) '인권을 통한 교육' 과 교과서

- 인권을 통한 교육 : 인권은 인권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때문에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충분히 인권을 누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거나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인권교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을 할 때,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에서 자유로움을 보장받아야 하며, 참여 과정에서도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고와 삶의 방식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차별 받지 말아야 하며,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인권 교육은 그 과정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 가는 것이며, 인권교육 장면에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 교과서 내용 구성
  - 친 인권적인 삽화
  - 친 인권적인 서술
  - 인권 상황을 배제하지 않음

## 2.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중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

### 1) 초등학교

학년	교육과정진술내용	인권 관련 내용 요소
3학년	6. 다양한 삶의 모습들 - ⑥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
4학년	6.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② 성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양성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양성평등/ 차별
	4.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⑥ 소비자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	소비자 권리
6학년	4.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④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인권적 태도

### 2) 중학교

학년	교육과정진술내용	인권 관련 내용 요소
1학년	9. 우리의 생활과 법- ④ 일상생활과 직업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적극적인 법의식을 가진다.	권리구제/보호 방법
	10. 인권 보호와 헌법 ① 인권 의식의 성장과 헌법의 관계를 이해한다. ②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을 보호하는 수단을 이해한다. ③ 우리나라 헌법이 구현하려는 정부의 성격과 형태를 이해한다. ④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 의식을 가진다.	인권의 발달/ 인권 형성의 역사적 사건과 과정/ 헌법에 담긴 기본권/ 기본권 제한의 한계 등 - 인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 - 인권발달에 관한 역사 - 인권의 기본 목록

### 3) 고등학교 1학년

학년	교육과정진술내용	인권 관련 내용 요소
1학년	<p>7.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p> <p>① 현대 민주 국가에서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으로서 인권 보장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법의 역할과 관련지어 탐구한다.</p> <p>②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원리를 인식하고, 특히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한다.</p> <p>③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나 범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탐색한다.</p> <p>④ 법 제도에 대한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 및 사례를 파악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인권 의식과 법의식을 기른다.</p> <p>⑤ 현대 사회생활에서 인권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사회·문화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중요성/ 인권 보장의 의미/ 인권과 법의 관련성</li> <li>- 기본권을 통한 인권의 목록 심화</li> <li>-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인권의 역할</li> <li>-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한 논의</li> </ul>

## 3.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중 ‘인권을 위한 교육’ 내용

### 1) 초등학교

학년	교육과정진술내용	인권 관련 내용 요소
3학년	<p>6. 다양한 삶의 모습들- ③ 다른 고장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고장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이해한다.</p>	<p>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관점의 고려</p>
4학년	<p>6.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① 현대사회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본다.</p>	<p>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족의 다양성 이해에 대한 관점 고려</p>
	<p>2.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p> <p>① 다양한 의견 차이와 갈등을 조정해 가는 민주적 정치 생활의 기본 원리를 이</p>	<p>지역 자치에서 주민 참여의 의미를 통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관점 고려</p>

학년	교육과정진술내용	인권 관련 내용 요소
	<p>해한다.</p> <p>④ 주민 참여와 자원 봉사의 경험을 통해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p> <p>⑤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한다.</p>	
5학년	<p>6.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p> <p>② 민주화와 경제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져온 생활 문화의 변화를 탐구한다.</p> <p>③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의 삶을 조사한다.</p>	민주화의 과정과 그에 적합한 인문 논의에서 인권 확산의 중요성, 관련 인물 논의 가능
	<p>2.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⑥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대안을 모색한다.</p>	*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분배와 복지의 문제에 대한 관점을 익힐 수 있도록 내용 고려
	<p>3.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①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임을 이해한다.</p> <p>⑥ 산업 활동의 입지 선정과 지역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국토 가꾸기와 환경 문제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p>	* 환경권의 논의와 환경개발에서 다양한 '발전권-환경권'의 두 권리의 관점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함
6학년	<p>4.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①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해한다. ②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외의 다양한 법들이 우리 생활을 위해 필요함을 인식한다. ④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p> <p>⑤ 공공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자각하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를 기른다.</p> <p>⑥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p>	* 절차적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통해 시민사회적 인권의 관점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함
	<p>5.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⑤ 지구촌에서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단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⑥</p>	* 지구촌에서의 다양한 인권의 관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

학년	교육과정진술내용	인권 관련 내용 요소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한다. ⑦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깨닫고 이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6.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 ② 과학과 기술 발달의 방향을 이해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③ 세계화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⑥ 세계 인류의 번영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조사해본다.	* 세계화 정보화 논의속에서 정보인권과 외국인, 제3세계인의 인권 등에 관한 관점이 담기도록 함

## 2) 중학교

학년	교육과정진술내용	인권 관련 내용 요소
1학년	5.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③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인구 문제(인구 급증, 고령화, 성비불균형 등)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인구 관련 문제에서 노인 문제, 남아선호사상 등 인권적 관점 고려
	6.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④ 도시 내부에서 고급 주택지와 저급 주택지가 분리되는 모습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⑤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도시 문제에서 빈부에 대한 인권적 관점 고려
	7. 개인과 사회생활 ② 자아 정체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⑤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차별 현상을 이해한다.⑥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권적 관점/ 불평등에 대한 인권적 관점
	8. 문화의 이해와 창조 ②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문화 및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문화 상대주의를 통한 인권적 관점
	9. 우리의 생활과 법-③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법 제도와 그 원리를 이해한다. ④ 일상생활과 직업 생활 속에서 자	법의 원리에서 인권적 관점

학년	교육과정진술내용	인권 관련 내용 요소
	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적극적인 법의식을 가진다. ⑤ 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3학년	3.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 문제 ③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를 비교하고 사례를 통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한다. ④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이해한다.	환경문제에서 인권적 관점
	6.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② 정치권력의 원천과 주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이해한다. ③ 정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이해한다. ④ 민주주의의 이념을 역사적·사회적 전개 과정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절차적 민주주의 논의에서 인권적 관점
	7.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② 정치 참여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다. ③ 정치 과정에서의 행위 주체와 기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정치참여와 관련한 인권적 관점 고려
	8.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③ 인간의 경제생활은 분업과 교환을 통해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에 상호 의존적으로 전개되며, 어떤 일방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상대방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④ 시장 기능과 정부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사례를 통해 탐색한다. ⑤ 경제생활 속에서 소비자(저축·투자자), 생산자(기업가와 노동자),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과 책임을 탐색한다.	경제생활에서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인권적 관점 견지
	10. 국민 경제의 이해 ⑤ 실업의 의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실업 및 고용 논의에서 인권 고려

### 3) 고등학교 1학년

학년	교육과정진술내용	인권 관련 내용 요소
1학년	5.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연 재해와 환경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발전권과 환경권의 논의를 통한 인권적 고려



<p>6. 사회변동과 문화-②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③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문화 변동의 과정을 파악한다. ④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⑤ 우리 사회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사회·문화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갈등 조정에서 인권적 요소 고려</li> <li>- 다문화 사회논의에서 다문화권 / 문화 다양성 등 고려</li> <li>- 미래 직면할 문제에서 과학과 기술 등의 변화에서 인간 중심 논의와 인권적 관점 고려</li> </ul>
<p>8.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① 정치권력의 구조와 기능을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②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주체와 그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한다. ③ 정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참여 방법과 자세를 탐색한다. ④ 정치 발전의 과제를 정치 문화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⑤ 정치적 쟁점의 사례를 사회·문화적,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발전과정에서 인권적 관점 중요</li> <li>- 정치적 쟁점 해결에서 인권적 관점 고려</li> </ul>
<p>9. 경제 성장과 삶의 질 ⑤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사회·문화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질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권 요소 강조</li> </ul>
<p>10. 국제 거래와 세계화-⑤ 사회·문화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쟁점을 탐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 관련 논의에서 인권적 측면 고려</li> </ul>

### 3. 인권 내용 서술의 사례

#### 1)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연결



«함께 하기 1» -----

####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세계 인권 선언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따라 활동해 보자.

현대에 들어 시민들은 제1, 2차 세계 대전 중에 인간이 기본적인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은 확인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인권선언(1948)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들, 경제적·사회적 권리들을 담고 있다.

1. 세계인권선언내용을 찾아서 자신의 말로 쉽게 다시 써보자.
2. 1의 내용 중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와 그 이유를 발표해보자.

## 2) 인권과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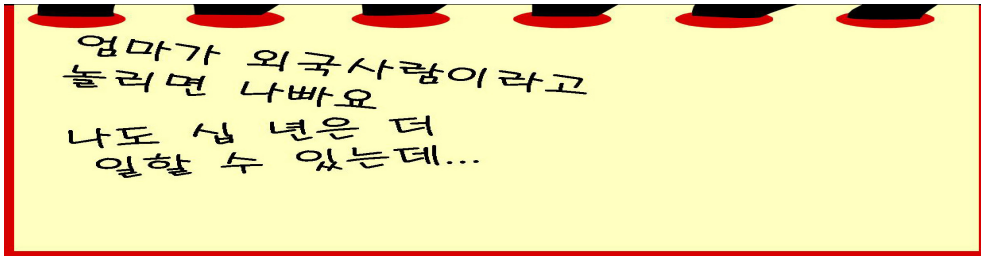
### 🕒 인권, 우리들의 이야기



비록 “인권”이라고 쓰지만  
 “사람은 모두 소중해요”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 《여는 활동》

1. 위의 광고를 보고, 다음과 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써보자.



2. 위의 내용을 참고로, 인권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 “인권이란, \_\_\_\_\_.”

### 3) 인권의 뜻과 발달과정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의사대로 자유롭게 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중하게 대접받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내가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 인권사상이다.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로서,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면서 확대되어 왔으며 이 과정을 **제 1세대, 제 2세대, 제 3세대 인권**으로 부를 수 있다. 이때 각 세대 인권은 앞 세대 인권내용을 포함하며 인권내용들은 모두 동등하게 존중된다.

제1세대 인권은 **자유권 중심**으로,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인권이다. 이것은 17- 8세기 서구 사회의 시민 혁명을 거치며 발달하였다. 1세대 인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를 선언했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각 세대 인권은 앞 세대 인권내용을 포함한다.

제2세대 인권은 **사회권 중심**으로, 19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발달하였다. 2 세대의 인권은 **분배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 1, 제 2 세대 인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제3세대 인권은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 4) 인권을 담은 헌법

##### 📍 인권의 보편성과 기본권

인권은 국적이나 인종 성별 종교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의 특성을 **보편성**이라 부른다. 따라서 인권은 각 국가나 사회의 규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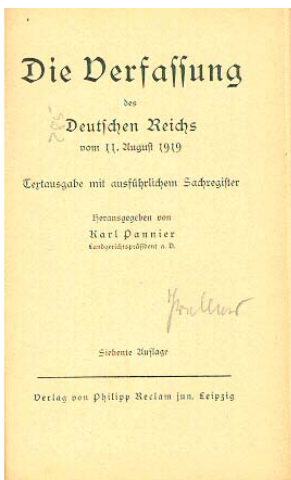
인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을 통해 그 모습이 나타나고 보장된다. 이렇게 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 기본권은 인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인권은 현실의 법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 📍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일반적으로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한 것으로서 한 국가의 조직과 구성 및 작동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의 인권에 기초하여 기본권을 헌법의



바이마르 헌법

일부로 규정한 것은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1776)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자유롭고 독립되어 있으며”,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들은 빼앗길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근대적 의미의 기본권과 더불어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이다. 이것은 “경제생활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서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하여야한다”, “적정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자에게는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 5) 청소년과 인권 논의

«함께 하기 3» -----

청소년의 기본권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 다음을 잘 읽고, 물음에 따라 활동을 해 보자.

### 사례1. ‘두발 제한 폐지’ 종이비행기 시위 논란

2005년 5월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공업고등학교. 쉬는 시간, 학생들이 하나 둘 창문으로 모여들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종이비행기를 창밖으로 날려 보냅니다. 학생들은 ‘두발제한 폐지’라는 구호를 쏟아 냈고, 화단



가득 쌓인 종이비행기엔 ‘두발 자유’ 같은 구호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려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교육 당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출처 SBS TV 2005년 5월 20일)

### 사례2.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참여 강요’ 논란

2004년 6월, 당시 00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자 학생회장이었던 000 군이 아침 교내 방송을 통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참여를 거부합니다”라고 선언하였다. 000 군은 그동안 사실상 ‘금기’였던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의식참여 강요를 정면으로 문제 삼



은 것이다. 그해 7월 학기말 시험 중 제적통보를 받아 사회적인 파장은 더욱 커졌다. 그 후 법원의 복학 판결과 000 군의 대학진학으로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다.(출처 2007.5.16 박광서)

1. 위의 각각의 사례는 헌법상의 기본권 중 어떤 것과 관련되는지 설명해 보자.
2. 위의 사례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 혹은 위의 사례처럼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던 경험을 발표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토론해보자.

# 3

## 도덕 교과목의 인권 내용 구성 방안

조 난 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수학습연구본부 본부장)







## 도덕 교과의 인권 내용 구성 방안<sup>1)</sup>

조 난 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수학습연구본부 본부장)

### 1 도덕과의 인권교육

#### 1) 도덕과에서의 인권교육의 의의<sup>2)</sup>

##### 가) 인권교육적 의의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가치, 태도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매우 높다. 도덕과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하여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를 인권교육적 관점에서 적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인권 개념에 대하여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윤리적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권문제를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다.

##### 나) 방향

-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인권의 이념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와 감수성을 기른다.
- 생명존중, 인간존중, 관용, 평등, 정의 등 인권과 관련한 개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단지 지켜야 하는 소극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적극적인 권리로서 표현될 수 있도록 강조한다.

1) 다음은 구정화, 조난심, 강명숙, 설규주(2007),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중의 도덕과 부분을 2009년도 교과서 개발 학년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제시한 것임.

2) 구정화 외(2004).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참조

-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공동체의식교육 속에 녹아 있는 인권 관련 개념과 내용들을 재구성하여 인권교육에 적용한다.
- 사회의 법과 규범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권도 소중한 가치임을 인식하게 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중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권리와 의무와의 충돌뿐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개별적 기본권들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모색하고 그러한 의사결정 결과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장려한다.
- 전통적으로 도덕, 윤리과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통일 및 북한 문제를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재조명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더 잘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다.

#### 다) 시도해 볼만한 활동

-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인권이라는 준거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낙태, 안락사, 인간복제 등의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로 모둠을 나누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토론을 벌일 수 있다. 토론을 통한 논의가 인권이라는 주제로 수렴되는 것이 좋다.
- 학교폭력, 차별, 왕따, 금품갈취, 부정행위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모둠별로 역할극으로 표현한다. 그러한 사례들이 <세계인권선언>과 <청소년헌장>의 몇 조에 위반되는지 찾아본다. 더 나아가 각 사례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친구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 이유를 적는다. 그러한 말들 중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본다. 또한 자신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들을 찾아본다.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물어 볼 수도 있다.
- 인권을 주제로 한 소책자 만들기(A4 용지 1장 이용), 공익광고 만들기(B4 용지 1장 이용)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 남북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왜 반인권적인 것이며 왜 비윤리적인 것

인지 토론한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에게 각각 어떤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따져 본다.

## 2) 개정된 도덕과 교육과정과 인권교육

2007년 2월에 개정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의 방향 중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 규범, 도덕적 쟁점들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기존 도덕과의 내용을 정련화, 적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도덕과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자가 적절한 도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세계화와 윤리문제, 생명윤리, 정보윤리, 인권교육, 환경윤리** 등을 강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sup>3)</sup>.” 곧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인권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관련 내용 요소들을 교과서 집필 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학년별/과목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도덕과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교과서 집필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인권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최대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사실, 도덕과의 내용은 인권교육을 넓게 해석하여 ‘타인존중’이라는 규범 정도로 해석하면 거의 모든 내용이 관련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초점을 모호하게 하면, 오히려 인권교육 강화 효과가 적어질 것이므로 내용상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다만, 어떤 내용 요소들은 전체가 인권교육과 관련되는 반면에, 어떤 지도요소들은 일부만 관련되는 차이는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를 ‘I.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 II.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III.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IV. 인권 관련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참여’의 4 영역과 하위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도덕과의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도덕과의 대부분의 내용 요소들은 어떤 하나의 인권교육 영역이나 하위요소에만 관련되지 않고, 여러 영역과 하위요소와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그

3) 조난심 외(200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05-8.

중 가장 관련이 깊은 부분에 연관하여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도덕과 교과서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집필할 때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인권교육 영역이나 하위요소와 관련지어 내용을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영역이나 하위요소와 관련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도덕과에서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다룰 때에는 학교급별로 차별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인권문제를 제시하고,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게 하여 인권적 민감성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교과서를 기술하도록 제안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인권 관련 도덕적 주제들을 토론의 주제로 삼아 학생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학습 과정을 거쳐 인권의 기본 개념에 비추어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인권의 기본 개념과 역사, 뿐만 아니라 인권의 가치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윤리적, 철학적 입장을 탐구하고, 성찰하도록 하여 윤리적 시각과 인권적 시각을 통합하여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돕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게 하였다.

넷째, 다음의 분석표에서는 지면 관계상 주로 내용적인 면에서 도덕과 교육과정의 지도요소와 인권교육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를 구성할 때에는 다양한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하면서 기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적이고 현장 참여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도록 한다.

### 3) 도덕과 교과서와 인권교육

#### □ 인권 교육 영역<sup>4)</sup>

- 1)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생활 관련 소재들을 많이 활용한다.
- 2) 주요 인권협약의 내용들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국제적인 인권 증진 노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술한다.
- 3) 인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가 간 이해와 입장의 대립 양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원인을 기술한다.

4) 도덕과 교과서에서 인권교육 내용을 다룰 때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조난심 외(2007), 도덕과 교과서 집필기준안 개발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07-2 참조]

- 4) 삽화나 사진에서 인권의 원리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한다.
- 5)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인권 침해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실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활용한다.

#### 4) 도덕과의 인권교육 내용 체계

<표-1> 도덕과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인권교육 내용 체계

내용 범주	하위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I.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1.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1-나 소중 한 나의 삶					2-가. 청소년 기와 비인간화 문제	1-가. 자아 정체성	
	2.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3-가 다른 사람 배려 하고 약 속 지키기				2-다. 남을 배려 하고 봉사 하는 삶			2-가. 인간 존엄 과 소수 자 보호	
	3. 인권 적 가치 및 태도	3-가. 친구와 사이 좋 게 지 내기	3-나 이웃 과 다정하게 지 내기	2-다 친구 간 의 정 과 예 절		1-나. 감 정 의 올바른 관 리	2-나. 공 정한 동	2-다. 이 옷에 대 한 관심 과 배려		2-나. 양 성 평 등 의 도 덕 적 의 미	
II. 인권 에 대한 기본 개념	1. 자유 권 적 인권										1-가. 자유 와 자율
	2. 사회 권 적 인권										2-가. 사 회 제도 와 정의
	3. 연대 권 적 인권										
III. 인권 에 관한 법 과 제도	1. 인권 의 의의와 역사										
	2. 국내 외 인권 관련 문서와 법							3-가. 바 람 직 한 국 가 의 모습	3-나. 북한 주 민 과 민족애		
	3. 국내 외 인권 관련 기 구와 제도										
IV. 인권 문제 의 합 리적 해결 및 참여	1. 인권 문제 분석 및 해결 방 안 모색				2-다 인 터 넷 예 절	3-가 북 한 동 포 및 새 터 민 의 삶 이해	3-가. 편 경 극 복 과 관 용	2-라. 사 이 버 예 절	2-나. 평 화 적 해 결 과 폭 력 예 방		
	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와 실천					2-다. 대 화 와 갈 등 해 결	3-다. 평 화 로 운 세 상			3-가. 타 문 화 에 대 한 이 해 와 편 견 극복	2-나. 사 회 윤 리 제 문 제

## 2. 초등학교 도덕 교과 인권 교육 내용안

### 1) 초등학교 도덕 5학년

내용		학년	5학년	
영역	요 소	관련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반영 방안	
I.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1.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2.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3. 인권보호를 위한 태도	(1)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나) 감정의 올바른 관리 분노, 좌절, 흥분 등 다양한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자신의 감정 표현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때와 장소 및 상대에 적절한 바람직한 감정 표현 방식을 배운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던 경험을 발표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들의 모범 사례를 통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① 분노, 흥분, 좌절 등의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 ②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것이 미치는 결과 ③ 상황과 상대를 고려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	자신의 감정 표현이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게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태도를 기르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II. 인권 에 대한 기본 개념	1. 자유권적 인권			
	2. 사회권적 인권			
	3. 연대권적 인권			
III. 인권 에 관한 법과 제 도	1. 인권의 의의와 역사			
	2. 국내외 인권 관련 문서와 법			
	3. 국내외 인권관련 기구와 제도			

내용		학년	5학년	
영역	요 소	관련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반영 방안
IV. 인권 관련 문제의 리해 결 및 참여	1. 인권침해 사 례 분석			
	2. 인권문제 해 결방안 모색	<p>(가)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p> <p>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정서적 통합에 의해 완성될 수 있음을 알고, 북한 동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동포와 교류·협력해 나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 동포나 새터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북한 동포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는 방법과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본다.</p> <p>① 북한 동포의 생활상 및 문화적 차이 알기</p> <p>② 북한 동포와의 인간적 교류와 협력 방안</p> <p>③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p>	<p>북한이탈주민(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입국·정착한 주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의 사례를 알아보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다.</p> <p>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임을 알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세를 갖도록 기술한다.</p>	
	3. 인권문제 해 결을 위한 참여 와 실천	<p>(2)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p> <p>(다) 대화와 갈등 해결</p> <p>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갈등의 원인과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덕적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도덕적 갈등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p> <p>① 도덕적 갈등의 원인</p> <p>②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갈등의 해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p> <p>③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p>	<p>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p>	

## 2) 초등학교 6학년

내용		학년	6학년	
영역	요 소	관련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반영 방안
I. 인권 존 중 의 가 치 와 태도	1.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2.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나)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했을 때의 느낌을 발표하고, 배려의 필요성과 의미를 찾아본다. ①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 ②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봉사하는 공동체의 특징 ③ 배려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일	우리 주변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보고,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특히, 단순한 동정이 아닌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태도	(나) 공정한 행동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불공정하다고 느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여 공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신이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찾아본다. ①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의 느낌 ② 불공정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③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특히, 불공정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II.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1. 자유권적 인권			
	2. 사회권적 인권			
	3. 연대권적 인권			
III.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1. 인권의 의의와 역사			
	2. 국내외 인권 관련 문서와 법			



내용		학년	6학년	
영역	요 소	관련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반영 방안
	3. 국내외 인권관련 기구와 제도			
IV. 인권 관련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참여	1. 인권침해 사례 분석			
	2. 인권문제 해결방안 모색	<p>(가) 편견 극복과 관용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문화 차이 때문에 상대를 차별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찾아본다.</p> <p>① 예절, 관습 등을 포함한 다른 문화에 대한 우리의 편견 ②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와 공존의 장점 ③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p>	<p>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관용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문화 체험 등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p>	
	3.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p>(다) 평화로운 세상 지구촌 시대에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세계 평화가 인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본다.</p> <p>① 지구촌 시대에 세계 평화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 ②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③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 실천</p>	<p>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지구촌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하도록 진술한다.</p> <p>아울러,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구촌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국가 차원, 국제적 차원을 알아보고 학생들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여 참여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p>	

### 3. 중학교 도덕 교과 교육 내용안(8학년)

내용		8학년	
영역	요 소	관련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반영 방안
I. 인권 존 중 의 가 치 와 태도	1.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2) 청소년과 도덕 (가) 청소년기와 비인간화 문제 오늘날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비인간화 문제 및 생명 경시 풍조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기존중 및 타인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오늘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비인간화 현상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해결책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청소년의 소비 생활과 절제 ② 자살, 약물 남용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윤리적 문제 해결 방안 ③ 인터넷(게임) 중독 등 각종 중독 현상과 건전한 자아의 성장	청소년기의 인권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자기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이 단원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게 되어 있으므로 그 취지에 알맞게 내용을 구성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인간화 현상을 단지 이상심리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윤리적 문제로 다루도록 한다.
	2.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3. 인권보호를 위한 태도		
II.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1. 자유권적 인권		
	2. 사회권적 인권		
	3. 연대권적 인권		
III.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1. 인권의 의의와 역사		
	2. 국내외 인권 관련 문서와 법		
	3. 국내외 인권관련 기구와 제도	(3) 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나) 북한 주민과 민족애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고,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남북이 같은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루되,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내용		학년	
영역	요 소	관련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반영 방안
		<p>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관점과 비판하는 관점을 비교해보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을 조사한다.</p> <p>①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          ②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          ③ 민족 정체성과 민족 공동체의 의미</p>	<p>록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인권관련 기구 등에서 조사 발표한 북한 인권 실태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 <p>북한 인권문제의 해결과 통일의 과정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구성한다.</p>
IV. 인권 관련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참여	1. 인권침해 사례 분석		
	2. 인권문제 해결방안 모색	<p>(나)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p> <p>갈등에 폭력적으로 대처했을 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폭력 사례와 폭력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p> <p>① 갈등 사례와 갈등 증폭의 이유          ② 폭력을 행사한 사례들과 문제점          ③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④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p>	<p>갈등 사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고, 만약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에는 새로운 문제, 새로운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도록 내용을 기술한다. 그리고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p>
	3.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실천		

## 라. 고등학교 도덕 교과 교육 내용안(10학년)

내용		10학년	
영역	요 소	관련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반영 방안
I.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1.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2.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3. 인권보호를 위한 태도		
II.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1. 자유권적 인권	<p>(1) 인간과 자율 (가) 자유와 자율 인간의 자율적 행동의 조건을 알고, 스스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려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자유와 필연, 결정론과 숙명론 등 관련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자율적 인간이 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p> <p>① 자유와 인과관계 ② 소극적 자유의 의미 ③ 적극적 자유로서 도덕적 자율성의 의미</p>	<p>자유와 자율의 의미와 자유권적 인권의 의미를 연관 지어 교과서를 서술한다. 그리고 도덕적 행동의 전제 조건인 자유와 함께 행동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적극적 자유인 자율성의 개념을 통해 인권적 논의와 윤리적 논의가 통합됨을 제시한다.</p> <p>이러한 윤리적, 철학적 논의는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p>
	2. 사회권적 인권	<p>(2) 사회 정의와 윤리 (가) 사회 제도와 정의 현대 사회 제도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기능을 이해하며, 제도의 불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이를 위해 제도의 불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p> <p>①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p>	<p>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덕목은 ‘정의’임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은 바로 각 개인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사회 제도의 확립 과정임을 제시한다.</p> <p>절차적 정의, 결과로서의 정의 등의 개념을 분명히 학습하게 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평등과 정의의 관점에</p>



내용		학년	10학년	
영역	요 소	관련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반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제도의 불공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li> <li>③ 사회정의의 의미(절차적 정의)</li> <li>④ 정의로운 사회 제도</li> </ul>	<p>서 평가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관련되는 역사적 사례, 국제적 사례 등을 제시하여 내용의 구체성을 높이도록 한다.</p>	
	3. 연대권적 인권			
Ⅲ.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1. 인권의 의의와 역사			
	2. 국내외 인권 관련 문서와 법			
	3. 국내외 인권 관련 기구와 제도			
Ⅳ. 인권 관련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참여	1. 인권침해 사례 분석			
	2. 인권문제 해결 방안 모색			
	3.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실천	<p>(나) 사회 윤리의 제 문제</p> <p>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윤리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 윤리 문제들을 분석해보고, 다양한 조사 활동과 토론을 통해 그것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식정보사회와 윤리의 문제</li> <li>② 분배 정의와 복지의 실현</li> <li>③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되는 경우</li> <li>④ 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li> </ul>	<p>양극화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배 정의와 복지의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한다.</p> <p>시민불복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 등을 예시하여 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 주장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p>	



##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인권 관련 내용 집필 예시

### 예시 1

■ 제재 명 : 공정한 행동 - 6학년

#### 1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 Ⅱ.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 (나) 공정한 행동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불공정하다고 느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여 공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신이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찾아본다.

- ①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의 느낌
- ② 불공정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 ③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

#### 2 인권교육 내용

1.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

3. 인권보호를 위한 태도

#### 3 도덕과 인권교육 제재의 성취 목표

- ▶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 불공정한 행동을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한다.



#### 4 제재의 전개

<p>▷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서 공정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의 느낌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면?</li> <li>2.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li> <li>3. 공정한 행동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면?</li> <li>4.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li> </ol>
--	---

#### ☞ 도덕과에서의 토론/논의를 통한 주제 탐구과정

1단계 : 학습 문제 파악

2단계 : 토론/논의를 위한 자료 수집과 읽기

3단계 : 토론(전체/소집단별 과정)

i) 문제의 확인

ii) 문제의 원인 분석/문제 해결의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iii) 제시된 의견이나 주장의 타당성 검토

iv) 합당한 결론이나 실천 방안 도출

4단계 : 개인별로 지지하는 입장/가치 확인(공언)

1.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의 느낌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면?

- 만약 내가 반 친구들로부터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거나 집이 가난하다는 등의 이유로) 따돌림을 받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해보고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자.

<그림 >

내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

**만약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면.....**

- 내 마음은 타다 딱 숫덩이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속이 너무나 썩어서 타 타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 내 마음은 그네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왔다갔다 볼 안하기 때문이다.
- 
- 
- 
- 

▷ 각자 그림과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고, 이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을 듣고 공통점을 찾아 정리해 본다.

---

---

**2.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와 활동을 제시한다.

**▶ 학습 자료 1**

※ 다음을 읽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를 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를 하고, 그 이유를 발표해보자.

1.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봉급을 더 적게 받아야 한다.

(    )

그 이유는

---

2. 지능이 낮은 사람은 지능이 높은 사람보다 당연히 나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

그 이유는

---



3.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돈을 벌어야 한다. (     )  
그 이유는  
\_\_\_\_\_
4. 자기가 급식 당번을 할 때에, 자기의 친구에게 떡볶이를 더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  
(     )  
그 이유는  
\_\_\_\_\_
5.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100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     )  
그 이유는  
\_\_\_\_\_
6. 남자가 군대를 가고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 휴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  
그 이유는  
\_\_\_\_\_
7. 자기가 믿는 A종교가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A종교를 믿어야 한다.  
(     )  
그 이유는  
\_\_\_\_\_
8. 수학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은 청소를 시켜도 된다. (     )  
그 이유는  
\_\_\_\_\_
9. 친구들을 사귈 때 친구의 부모님이 잘 사는가를 보면서 사귈다. (     )  
그 이유는  
\_\_\_\_\_

▶ 학습 자료 2

※ 다음 글을 읽고, 여러분이 대신해서 빈칸에 글을 써 넣어보자.

<1>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의 월급은 우리나라 사람이 받는 월급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장주들은 그들에게 한국 사람과 다르거나 혹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욕을 주고 심지어 주기로 한 월

급조차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필리핀 사람들의 지위가 국내에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공장주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

---

<2>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취업을 한다든지 혹은 장애인이 취업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대기업에서 여성의 취업자를 한 때 많이 뽑았지만 여성들은 알게 모르게 압력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3> 철중이는 어렸을 때 뇌수술을 하다가 다쳤다.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물론 선생님께서 말하는 것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다. 오늘은 짝을 바꾸는 날이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철중이와 짝이 되지 않았으면...”하고 바란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눈치 채고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

---

출처: 이명준 외(2001), 「교과교육에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 연구: 초등학교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109쪽.

### 3. 공정한 행동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면?

○ 학생들이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역사적 사례 혹은 동화 등을 통해 읽은 공정한 행동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그 행동의 특징과 그러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토론해 본다.

#### ▶ 학습 자료 : 짝 정하기

- 학급에서 짝을 정하는 공정한 방법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게 한다.
- 장단점을 논의할 때에 주로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 소외되는 학생이 생길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짝을 정하는 방법	장 점	단 점
추첨으로 정하기	-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	- 눈이 나쁜 철수와 같은 아이들에게 뒷자리가 걸리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친한 친구끼리 앉기		
일찍 온 수서대로 앉기		

#### 4.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다양한 갈등 해결 사례를 제시하여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모색하도록 한다.

#### ▶ 학습 자료 1: 차별 없는 학급 만들기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06),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97-99쪽

<1> 다음 참고 자료를 읽고(교사가 설명해주고)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을 한다.

**문화적 정체성/문화적 다양성**

모든 사람에게는 문화적 정체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은 그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종종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출신의 수소 집단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이 인권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힘이 강한 집단이 자기 집단의 문화를 힘이 역한 집단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아동 권리 협약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29조는 자신의 문화, 언어 및 가치 체계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있다. 제30조는 소수 공동체 및 원주민 집단 아동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 및 언어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31조는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은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 및 사회정체성 내의 독창성과 다중성에 기인한다. 교류, 혁신 및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자연에게 필수적인 것처럼, 인류에게 필수적이다.

- 우리나라에는 문화적 소수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집단인가?

- 소수집단의 문화가 존중되고 있는가?
- 소수 집단은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문화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밀리에만 가능한가? 또는 전혀 불가능한가?
- 학교에서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다양한 문화를 보전하고, 개발하며,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지배적 집단이 때로 자신의 문화를 소수집단에게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소수집단 연사를 교실에 초청하여 그들의 문화에 대해 강연을 하게 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자신의 고정 관념에 대해 반성해 본다.

<사진>

\*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교실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 예시 2

■ 제재 명 : 편견 극복과 관용 - 6학년

### 1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 Ⅲ.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 (가) 편견 극복과 관용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문화 차이 때문에 상대를 차별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찾아본다.

- ① 예절, 관습 등을 포함한 다른 문화에 대한 우리의 편견
- ②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와 공존의 장점
- ③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 2 인권교육 내용

1. 관련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참여

3. 인권문제 해결 방안 모색

### 3 도덕과 인권교육 제재의 성취 목표

- ▶ 문화 차이 등을 이유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사례를 알아보고, 그로 인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한다.
- ▶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와 집단에 대해 관용적 자세를 가질 때의 장점을 알고,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제재의 전개

- |   |  |
|---|--|
| ▷ 문화 차이로 인한 편견의 실태를 알고, 이를 극복하는 관용의 자세가 | 1. 예절, 관습 등을 비롯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한다.<br>2.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가진다. |
|---|--|

중요한 까닭은?

3.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1. 예절, 관습 등을 비롯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편견으로 인한 문제 사태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인해보자.

▷ 다음 사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 차별사례 - 국가인권위원회(2005),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p. 65-66.

**사례1)** 장애가 있는 ○○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는데 여름이라 땀이 많이 났습니다. 힘들게 버스에 오르는 정씨를 보며 앞에 앉은 아주머니께서 “뭐 하러 밖에 나와서 고생 하나, 그냥 집에 나 있지……”하며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씨는 너무 황당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2)**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는 강남역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파는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을 구경하며 사려고 하자 판매직원은 △△에게만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가 이해가 되지 않아 자신은 성인이니 괜찮다고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직원은 그래도 팔 수 없다며 부모님이나 보호자를 모셔오든지, 다른 데 가서 사라고 했습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ch305.cafe>)  
여러분은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3)**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한 취업수첩 내용 중에 여성용으로 별도로 제시한 세 가지 질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첩에서는 면접 때 서류 복사나 차심부름 관련 질문을 받으면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철저히 하

겠다.”고 답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육아 관련 질문에서는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난다면 여성으로서 한때 아이 기르기에 전념할 것”을, 성희롱 질문에는 “반 아들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가벼운 말은 조크로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2004.11.26.)

여러분은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4) ‘혼혈아 왕따, 자살 비행 급증’**

각급 학교에서 혼혈아 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왕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A군(15)이 지난 9일 아파트 화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두들겨 맞았다.”며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A군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올 들어 혼혈아 왕따 관련 자살자는 13명으로 늘었으며 경찰에 접수된 왕따 피해 신고도 하루 평균 10.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2004. 12. 9)

여러분은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다음 사례를 읽고, 역할을 정하여 역할놀이를 해보자. 각각의 입장이 되었을 때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해보자.

▣ “백인 아니면 안 됩니다.” 영어학원 인종차별 실태

**\*\*오직 백인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례1 :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한국계 백인 혼혈인 글로리아(Gloria). 그녀는 지난 1월 취업비자를 받아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입국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녀는 영어강사 자리를 찾던 중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글로리아는 인터넷을 이용해 강남의 A영어학원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를 제출했다. 처음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학원은 사진을 요구했고,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A학원 측은 결국 글로리아에게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저희 학원은 오직 백인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인들은 더 심한 경우를 당하기도 하니깐요. (The company is looking for only white people. Korea is a racist country and always will be so you shouldn't take it personal, and not to feel bad because, the blacks have it worse here.)”

#사례2 :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흑인 데이비스(Davis)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는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와 강남 일대의 몇몇 영어학원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학원측은 언제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그때마다 채용에 탈락했다. 어떤 학원에선 전화 인터뷰까지 통과했으나 학원장과의 면접에서 탈락했다.

현재 수원 소재 B영어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그때 내가 채용되지 못한 것은 흑인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며 “지금의 학원도 나를 고용한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한다. 아마 학생들의 부모는 내가 흑인인 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흑인강사는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 영어학원의 인종차별은 외국인 영어강사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경기 분당과 서울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2년째 일하고 있는 더글러스(Douglas)는 “한국의 영어학원은 가급적 유색인종을 채용하려 하지 않는다. 일부 규모가 큰 학원에서 채용하기도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원어민 강사 리쿠르팅 업체인 워크앤플레이(WorkNPlay) 관계자도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의 경우 강사직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 기회가 훨씬 적다. 아마 강남이나 분당 일대의 학원에서는 흑인 강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어학원도 할 말은 있다. 수강생들의 선호에 따라 백인 위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 강남의 C학원 채용담당자는 “아무래도 학원의 이미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수강생들은 흔히 영어학원이라면 미국에서 온 백인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더욱 백인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강생들이 백인이 아닌 외국인 강사들에게는 영어를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은 백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이혜리(26·경기 산본) 씨는 “수강생들 사이에 흑인들은 역량이 강하고 고급스럽지 못한 영어를 쓸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학원의 수강생인 윤선정(24·서울 서대문구) 씨도 “흑인의 외모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무서울 때가 있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 한국계 혼혈인 “한국의 인종차별은 매우 충격적”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한국 사람은 인종에 대한 서열 의식과 출신국의 사회 및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외국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은 우대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 출신의 외국인은 멸시한다.”고 비판했다.

글로리아는 그 일을 겪은 후 국내 한 영자신문의 독자투고란에 “한국의 인종차별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며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실었다. “하인즈 워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 바로 얼마 전 아니었습니까? 한국에 다니엘 헤니나 테니스 오와 같은 인기 있는 혼혈인 아이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시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는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극복 없이는 아시아의 허브라는 지위를 얻기 힘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mailto:cch@donga.com)

-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가 되려는 흑인 청년의 입장

---

- 영어학원장의 입장

---

- 영어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입장

---

- 세 가지 입장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과 느낌 문제인지를 토론해보자.

## 2.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가진다.

▷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여행기를 조사해 와서 발표해본다. 그리고 각자 가고 싶은 나라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게 한다.

▷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의 음식들을 알아보자.

▷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과 음식에는 나름대로의 전통과 의미가 있음을 알고, 이들을 인정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본다.

3.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우리 주변의 다양한 처지의 사람을 배려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찾아보자.

-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키가 작은 친구들이 누름단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림판을 놓아두었어요.
-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위해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어요.
- ▶ 공부가 뒤떨어진 친구에게 선생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세요.
- ▶ 사람들의 피부색(살색)은 각기 다르죠. 그래서 ‘살색’ 크레파스가 없어졌어요.
- ▶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국회의원 수 등을 법으로 정했어요.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5),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66쪽.

▷ 내가 찾은 사례는:

- 다음 자료를 읽고, ‘살색’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보자.

▣ 크레파스 ‘살색’ 표기는 인종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국)는 1일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 색을 ‘살색’으로 이름붙인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토록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술표준이 정한 ‘살색’ 색명은 특정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게만 해당되고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는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크레파스의 ‘살색’ 참 우스꽝스러워

경기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김해성(40) 목사는 올해 반드시 ‘살색 없애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들의 크레파스나 물감에 나오는 ‘살색’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이나”면서 “이는 우리 스스로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살색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일부 지역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인종차별적인 색깔 구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시했다.

전 세계가 같은 경제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마당에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노동자라는 단어 앞에 ‘외국인’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2년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노동자의 집 간판 표기를 외국인(foreign) 대신 이주(migration)로 바꿔 달았다. 국제화, 세계화된 경제체계 속에서 노동을 위해 입출국을 하는 개인은 어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노동을 위해 이주한 세계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김 목사는 “각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노동에 있어서만큼은 인종적·민족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외국에서 온 노동자는 불법이건 합법이건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면서 ”온 인류가 서로를 존중하고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보장받아야만 단일 민족의 존재가치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남 /김기성 기사

rpqfk@hanni.co.kr

(출처 : 인터넷한겨레, 「근본을 세우자」 /국가인권위원회(2005),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p.140)

### ▷ 살색에 대한 편견 없애기 공익광고

- 표어
- 그림

○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2세들을 이해하고, 돕는 방법을 찾아보자.

▷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2007),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pp. 220-221)

▣ 2005 국제결혼 2세 보고서- 우리도 ‘한국인’ 입니다.

파키스탄 아빠와 한국인 엄마에게서 태어나 그 까만 얼굴 때문에 매년 새 학년이 되는 게 두렵다는 요한이! 자신과 같은 2세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배기철씨!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아가지만 남들과 다른 피부색 하나로 소외 받고 상처 받는 사람들이 있다! 전후 기지촌 주변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2세, 1세’들이나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아빠로 둔 21세기 신 국제결혼 2세들인 ‘코시안’들이 바로 그들. ....

1)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2) ○○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 편견을 버린다.
- 사이좋게 지낸다.
- 관련된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 후원금을 보낸다.

---

나) 우리 사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언론기관에서는 국제결혼 2세들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
-

# 부 록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관련 통계 및 자료

- I.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결정례
- II.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진정 및 권고 현황
- III. 인권 관련 통계
- IV.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및 콘텐츠 소개



## 1 아동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관련

(1) 2002. 9. 9.자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 의견

## 【결정요지】

## I. 학교생활규정(안) 전반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4.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
  -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 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5.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
6. 예시안의 ‘목적’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것과 달리 전반적 내용은 학생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교사 및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안에서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9. 각급 학교 및 도·농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함. 특히, 초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2) 2003. 5. 21.자 03진인26 결정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승강기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 등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교사 및 학생의 신규임용·전보 및 입학·전학시에 ‘장애인등’에게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3) 2004. 8. 16.자 04진인1581 결정 [사증발급 불처분]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까지 출산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불처분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대사관 영사부에서 결혼동거 목적, 단기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직업, 재산현황 등) 교제경위 및 생활실태 파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동 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국제규약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규약 및 아동복지법에 위배되는 조치로 진정한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됨

(4) 2005. 2. 28.자 05진인03 결정 [사증인정서 미발급]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진정한 자녀의 사증인정신청서의 발급을 불허한

것은 아동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권고한 사례

(5) 2005. 6. 27.자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현행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각 시·도 교육감에게 그 개선을 각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각 권고함

(6) 2005. 8. 31.자 05진인1055 결정 [학교급식 관련 지문날인]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7) 2005. 12. 26.자 05진인3073 결정 [직권남용]

학생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교실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9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8) 2007. 1. 15.자 06진인943 결정 [학생간 폭행 방지]

피해자가 6학년 학교생활 동안 수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특히 가해학생들이 경찰에 고소되어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입원 및 4주 진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피진정인 학교측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9) 2007. 2. 13.자 06진인495 결정 [운동선수 이적불허]

이적 동의서 발급후 12개월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중고등학교농구연맹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은 헌법 제10조 침해이므로 개정을 권고한 사례

(10) 2007. 9. 7.자 07진인898 결정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

초등학교 야구선수의 타시도 진출시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피진정인인 ○○초등학교 교장이 야구선수 이적동의를 불허한 것은 헌법 제10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1) 2007. 12. 14.자 07진인2659·2660·2793 (병합) 결정 [폭행 등 부적절한 처우]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체벌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일부 내용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등을 한 사례

(12) 2008. 2.28. 자 06진인1951 결정 [과도한 체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학생지도 방법과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3) 2008. 9. 25.자 07진인4677 결정 [부당한 학교폭력 조사]

폭행가해자를 찾기 위해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별동의 없이 즉시 학생을 임의로 촬영한 것은 헌법 제10조 초상권(촬영거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4) 2008. 11. 26.자 08진인2598 결정 [전학 강요 등]

운동실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운동선수의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 2 아동의 자유권 및 사생활 보호 관련

### 1 신체의 자유

(1) 2005. 6. 21.자 04진인3707 결정 [적법절차위반 등]

경찰관이 청소년 절도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면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면서, 청소년에게 경찰관 정보원의 역할을 강요한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한 사례

(2) 2008. 2. 13. 자 06진인1254 결정 [고교투수 혹사]

피진정인(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고등학교 야구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혹사행위는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협회가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 ②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

### (1) 2008. 2. 28.자 07진인1146 결정 [학교 안 학생의 표현의 자유]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들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 (2) 2008. 9. 25.자 07진인4150 결정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

학내 집회 해산, 집체교육 실시 및 진술서 징구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 (3) 2008. 7. 3.자 08진인1739 결정 [집회의 자유 침해 등]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 ③ 사생활 보호 및 프라이버시

### (1) 2003. 5. 12.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4. 6. 4.자 03진인5950 결정 [비밀전학생 신상정보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이 가해자에게 신분 누출 염려 없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사례

(3) 2004. 9. 6.자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 의견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요지】**

법안 제11조 제1항 중 실종아동의 조기발견과 신분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아동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보호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아동, 검사를 원하는 입양아동으로 규정한 것은 사진식별이 가능한 아동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등의 유전자검사 남용의 소지가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와 OECD가이드라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준에 반하므로 유전자검사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대상 아동의 범주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4) 2004. 12. 27.자 04진인37 결정 [성폭력수사과정]

**【결정요지】**

- [1]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 누설 및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을 위법이라 판단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례
- [2]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에게 관련자들의 징계 등을 권고한 사례
- [3] 성폭력사건 수사 관련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05. 3. 25.자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기장 검사관행은 아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그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학생, 즉 아동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지만 인권의 주체이기도 하며 학교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관행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 [2] 검사·평가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그 고유한 양심세계를 보장하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의 강구가 가능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그 개선을 권고

(6) 2005. 8. 22.자 05진차37 결정 [소년보호처분전력과 관련한 사생활 자유 침해]

지방검찰청이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등검찰청에 회보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지방검찰청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공무원 등 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조회·회보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결정이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는 회보하지 아니하도록 검찰 조회용 터미널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권고한 사례

(7) 2006. 4. 10.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005. 12. 26. 초중등교육정책과-2983호로 국가인권위원회로 판단을 의뢰한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제공 요청에 관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위반됨과 아울러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 [2]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사업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3 아동의 교육권 관련**

(1) 2006. 10. 9.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권고

**【결정요지】**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유·초·중·고등학교의 통학로 확보, 통학로 안전성에 대한 최소기준 제시,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
- [2]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 교육부분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여 삽입하고, 대기환경보전 등을 개정하여 평상시 및 건설공사시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규제기준을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강화할 것을 권고



- [3]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작성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
- [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인허가시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지역 및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교육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 2006. 10. 13.자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환경영향평가항목 조정에서 별표2 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 관련)의 ‘교육’ 항목을 존속시키고,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작성지침을 보완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표명

(3) 2007. 7. 23.자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시행을 권고한 사례로 이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장이 학구내 거주사실을 확인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취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역별·시기별로 집중하여 적극 홍보하고, ‘취학아동명부’ 작성시 담당공무원이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말소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4) 2008. 4. 3. 자 07진인2330 결정 [퇴학처분]

피진정인의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 조치는 법령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 4 참여권 관련

### (1) 2005. 9. 28.자 05진차250 결정[부당한 퇴학처분]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 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진정인에게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재심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학생징계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토록 학생선도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사례

### (2) 2006. 5. 18.자 06진안136 결정 [퇴학 처분]

퇴학처분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학생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관련 적정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3) 2006. 6. 28.자 06진안1030 결정 [부당 퇴학]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 5 차별 및 평등권 관련

### (1) 2002. 7. 31.자 어진차3 결정 (크레파스색상의 피부색 차별)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제화·세계화로 국가 및 인종간 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 색깔만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업표준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2002. 6. 18. 자 02진차22결정 [대학신입생모집과정상 나이차별행위]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대학신입생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사례

(3) 2003. 5. 7.자 02진차70 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보호자 정의의 차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4) 2003. 3. 31.자 02진차80, 130 (병합) 결정 [성적 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 등 침해]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련)은 헌법상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규정 중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사례

(5) 2003. 9. 15.자 03진차127 결정 [비학생청소년 차별]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학생들에게는 할인해 주면서 비학생 청소년에게는 할인해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되기에 청소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6) 2004. 2. 16.자 03진차27 결정 [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 [1]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장애종류 가운데 특정장애 종류에 대하여서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이 다른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사례

(7) 2005. 6. 27.자 05진차204·145·119(병합) 결정 [두발제한]

- [1]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주체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이발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 [2]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에 대해 일정 정도의 제한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해야 하므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상 곱슬머리의 여학생 등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 [3]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학교장에게 향후 두발단속 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중학교장에게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8) 2005. 9. 28.자 05진차517 결정 [교육기관의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사례

(9) 2005. 10. 24.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선 의견

청소년의 지나친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2005. 7. 18. 발의)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및 헌법 제75조 포괄 위임입법금지원칙과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에 반할 수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및 제31조에도 부합하지 못하므로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

(10) 2005. 11. 7.자 05진차355 결정 [이혼여성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수급요건]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자녀가 동일호적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현행 호적제도상 부모 이혼시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되어 이혼한 남성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자녀와 동거해야만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양육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혼한 여성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11) 2006. 2. 27.자 05진차540 결정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피진정인 연맹의 「선수선발세칙」 제3조 제3항이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 불허’를 규정하고 있는 「선수선발세칙」의 내용은 대학졸업자만이 실업축구팀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학학력이 직업인으로 축구를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축구팀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선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의 제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판단됨.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선수선발 세칙」 제3조 제3항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한 사례

(12) 2006. 5. 29.자 06진차37 결정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정한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13) 2006. 5. 29.자 05진차523 결정 [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초등학교들이 학생의 어머니들을 급식당번으로 배정한 후 불참 시 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저학년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가치관을 개선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함으로써 개선할 문제이지 이 사건 급식당번제도 자체가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 판단한 사례

(14) 2006. 7. 18.자 06직차6 결정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 내반슬에 대한 제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15) 2006. 8. 29.자 04진차386 결정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 차별]

화교학교를 다니는 화교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전·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등,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화교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진학할 때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16) 2006. 10. 6.자 05진차100, 236, 534, 06진차29, 171 (병합) 결정 [대학교의 수시 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17) 2006. 11. 28.자 06진차449 결정 [학급 회장 자격 제한 차별]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학생을 선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에 학급 회장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인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례

(18) 2006. 12. 10.자 06진차411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피진정인에게 ○○학교에 등하교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학습권이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

(19) 2006. 12. 11.자 06진차96, 107(병합) 결정 [종교 차별]

검정고시를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것이기보다는 주 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학교의 경우 아직 전면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완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우므로, 검정고시 시행요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해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정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 2007. 3. 28.자 06진차418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 [1]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
- [2] 피진정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1) 2008. 1. 14.자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결정요지】**

국립중앙도서관의 18세 미만의 초중고생 입관 제한은 비례의 원칙(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법」 및 이 사건 협약에 보장된 아동의 정보접근권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2) 2008. 1. 28.자 08진차13 결정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독실 운영]

정독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독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정독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23) 2008. 5. 2.자 08진차116·117(병합) 결정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의한 차별]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급 설치를 법률로써 보장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갖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에 대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학급 설치가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우리 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4) 2008. 5. 19.자 07진차459 결정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차별]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우수자반 제도를 시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25) 2008. 5. 19. 07진차1031 결정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기회 차별]

인재숙 운영 전반에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과, 옥천인재숙을 운영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재숙의 선발방식, 운영주체, 운영방법을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26) 2008. 8. 25.자 08진차158 결정 [성적을 기준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자율학습 전용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학습 전용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27) 2008. 11. 10.자 08진차727 결정 [정학 이력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 이용 차별]

정학 이력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전입학심사를 다시 실시할 것과 ○○한국학교 학칙에 전입학 불허사유를 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 6 아동보호

- (1) 2003. 12. 8.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 권고

### 【결정요지】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 [1]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 [2]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 [3]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 사례

- (2) 2007. 9. 20.자 소년법 개정안의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

소년법개정안중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아동의 인권보호에 반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 7 인권교육

- (1) 2002. 10. 28.자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교육부의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 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교과서 내용을 수정 협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 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기준 등 개선 권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의 확대, 변경사유 심사 지침 마련, 사업장 이동 횟수 제한 폐지, 사업장 변경기간도 현실적 변경 가능 기간으로 연장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사업장 이동 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최소화 권고	1. 10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검토 중
집회금지통고제도 등의 폐지 및 개정 권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집회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	1. 28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검토 중
종교시설 내 공직선거 투표소 설치 금지 권고	투표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 설치를 배제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	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일부 수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근로기준법」 중 1일 8시간 근로원칙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규정은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 법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할 것, 법령요지 등 책자를 제작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할 것 등을 권고	4. 14	노동부장관	검토 중
카이어링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카이어링제도는 차량 소유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비닐류스티커의 임의적 제거 금지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5. 15	창원시장	수용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표명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운동, 위생과 의료), 접견 관련 규정 및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	6. 2	법무부장관	일부 수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모든 자와 그 유족이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제2조의 납북피해자 정의 규정 중 제3호 다목의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6. 5	통일부장관	검토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이행에 관한 권고	국방부가 2007년 9월에 제시한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	7. 11	국방부장관	검토 중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	중진 위원회의 납북피해자 관련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면서,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7. 18	국회의장, 국무총리	검토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근로자 학자금지원제도를 현행과 같이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7. 18	노동부장관	수용
국가정보원의 신원진술서 서식에 대한 의견 표명	국가정보원장에게 약식 신원진술서 항목 중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명 및 직위’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7. 31	국가정보원장	검토 중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 일자	해당기관	수용 여부
채외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 촉구에 대한 권고	중국정부가 유엔난민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규 및 인도주의적인 고려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	8. 4	외교통상부장관	검토 중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아동청소년옹호부퍼슨이 규정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될 경우 그러한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	8. 1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수용
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강구」(지시)에 대한 의견표명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에 대하여 명백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를 두는 등 헌법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방부에 의견표명	8. 21	국방부장관	검토 중
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이 「헌법」 및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이 안의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정책에 대하여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8. 21	국회의장	검토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등 행위 허용 규정 도입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행과 같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9. 2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불수용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 권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추진하고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	9. 30	통일부장관	검토 중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개정법률안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명시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의거한 기본이념 규정을 신설 또는 적시할 것, 아동청소년의 의사표시권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 및 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할 것 등을 권고함	10.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일부 수용
법원 청소년옹호근로자 인권개선 권고	법원 건물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저임금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	10. 9	대법원장	검토 중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기관에 위원회를 명시하고, 정신보건시설 평가에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추가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10. 1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수용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부착사업에 대한 의견표명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노출시 범죄 대상화 등의 악용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DB의 통합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11.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검토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발과정에서 세입자 권리 보장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을 삭제해 한다는 의견을 표명	12. 4	국회의장	검토 중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군형법」 상의 상관살해죄 및 초병살해죄의 법정형을 전시, 평시 등 구체적인 범죄상황에 따라 세분화하며, 평시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12. 22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검토 중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정보원의 직원 임용 시 연령 제한의 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공무원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12. 22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불수용

##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연번	권고(의견표명) 제목	의견제출 요지	의결 일자	관련기관	판결현황 (이행현황)
1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대상자를 '18세 이상인 자' 와 '18세 미만의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으로 한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18세 미만의 초중고생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입관하여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정보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18세 미만의 고교생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	1. 14.	헌법재판소	심리 중
2	HIV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표명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HIV감염 외국인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할 권리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출함	2. 18.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수용)
3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제출	외국인근로자가 비록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와 법적 규율의 대상을 달리하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적절한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5. 18.	대법원	심리 중
4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사건 관련 의견제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 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촉구하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5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2006헌마1098, 1116, 1117 병합)에 관한 의견제출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 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비맹 제외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출.	7. 25.	헌법재판소	수용

## 3 인권침해 주요 진정사건 및 현황

### □ 검 찰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인격권 침해 등	○○지방경찰청 소속 피진정인이 피의사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의 업무용 팩스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과 관련, ○○지방경찰청감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6. 19.	수용
부당한 형집행정지 발부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형집행장을 발부하기 전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집행정지 발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형집행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9. 25.	검토 중

## □ 경 찰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집회금지통고제도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집회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이 「헌법」 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	1. 28.	검토 중
경찰관의 부당한 알몸수색 등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임의동행한 후 규정을 위반하여 13시간 동안 과도한 조사를 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진정인에 대해 알몸수색을 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담당조사관을 경고조치할 것과, 알몸수색을 한 여경을 직무교육할 것, 관련 업무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담당 수사팀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경찰서장에게 수사과장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2. 13.	수용
유치인 신체검사관련 인권침해 등	유치장 입감자를 정밀신체검사를 하면서 검사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신체 검사에도 입하지 않고 알몸수색을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과, 직무관련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13.	수용
집회불허 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의 서울공항 앞 집회 신고에 대한 집회 금지 통고는 그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집회 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어 ○○경찰서장에게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8. 4.	불수용
건물불법봉쇄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현행법상 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심검문 조항으로 피의자와 관련성이 있는 차량 등 의심할 만한 어느 정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차량 트렁크를 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 할 것을 권고	10. 9.	검토 중
촛불집회 참가자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적인 진압 등과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 경찰청장에게 △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 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아침 안국로타리 등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 시위진압용으로 살수차 사용시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소화기를 사람에게 대해 직접 분사하지 말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제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	10. 27.	검토 중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의 공범 현장검거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의자 검거장소 주소와 얼굴의 모자이크 처리 등에 대한 여과 조치 없이 언론에 동영상을 제공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과 관련,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인권교육 실시 권고	12. 24.	검토 중

## □ 군 대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육군사관학교 3급도 관련 인권침해	육군사관학교는 자퇴규정이 없이 강제 퇴교하여 명예권을 침해하고, 3급(금주, 금연, 금혼) 제도가 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육사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에서 자퇴희망자를 퇴학으로 처리하는 현 제도 및 3급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5. 8.	불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육관사관학교가 가용시간의 부족으로 정식입교 전인 기입교 기간중 군의관 후보생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육군사관학교, 논산훈련소 등 타 후보생의 경우 종교행사 참석 보장)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기입교 기간에도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	7. 17.	수용

## □ 기타 기관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인도주의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등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를 법률로 규정하고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되, 인도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취업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체류기간을 부여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에게 긴급 혹은 일상적 의료보호 및 기본적 사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1. 28.	일부수용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시청이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개인정보(주소,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를 노출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29.	수용
집회의 자유 침해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고된 집회와 관련하여 정보관이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 신고서 기재사항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홈페이지에 피해학생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징계조치 권고, 경찰청장에게 정보활동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7. 3.	수용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근거로 해당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한 것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7. 17.	수용
탈북주민 복수에 의한 인권침해	북한 주민 22명이 한국정부 조사 후 복송된 것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월선 북한 주민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인권보장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하고 귀순의사가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언론대책 강구 권고, 통일부장관에게 복송되는 북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 및 생사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할 것을 권고	7. 17.	불수용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선정 및 운영관련 인권침해	서울시에서 현장시정추진단을 부서별로 부적격 기관전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객관적인 선정기준 없이 3%의 의무할당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동 추진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도 교육관련 법령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장기간 풀 뽑기 등 현장노동 중심으로 사실상의 징벌적 수단으로 운영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행 권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유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	9. 10.	불수용
학생 체벌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의 학생 체벌행위, 정상 수업시간에 집체교육, 학교 내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 조기등교 등에 대하여, ○○중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울산시교육감에게 체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주의 조치 권고	9. 25.	검토 중
개인정보 열람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 진정인이 열람하고자하는 개인정보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열람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부합하는 관련규정 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행 권고, 시도 교육감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11. 13.	검토 중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전화상담센터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요구	국세전화상담센터(1588-0060) 자동응답기(ARS) 이용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11. 13.	검토 중
부당한 전학강요에 의한 인권 침해	피진정인학교의 축구부 운영을 위해 타 시도 학교 운동선수 16명을 영입한 후 축구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8개월만에 타 학교로 다시 전학가라고 강요하여 14명이 원치 않은 전학을 가게 한 것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에게 피진정인 및 학교장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11. 26.	수용

#### 4 주요 차별진정사건 및 현황

##### □ 성별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모·부자 보호 및 자립 시설의 성차별	부자복지시설과 달리 모자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식당 및 조리실과 영양사 및 조리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차별 행위이므로, 여성부장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의 식당 및 조리실이 성별이 아닌 시설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여 설치되도록 설치요건 개정 권고.	1. 14	검토 중
간호사 채용 시 남성 배제	고객이 특정 성별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간호사 채용 시 남성 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차별이므로, ○○센터에 대해 간호사 모집 및 채용에서 남성 지원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	1. 28	수용
여성 수형자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 제한	정보화 기술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여성 수형자에게 정보화교육 없이 1일 1시간의 실습기회만을 부여한 것은 성차별이므로 ○○교도소장에게 여성 수형자의 정보화 학습기회를 확대토록 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여성수형자의 전반적 교육훈련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	11. 10	일부수용 및 검토 중
○○회사 승진에서의 성차별	○○회사가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학력과 병역, 근무연수를 승진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의 조건으로 채용된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 제도 등 양성 평등한 승진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	12. 29	검토 중
○○항공 객실승무원 모집 시 성차별(직권조사)	○○항공이 객실 승무원을 채용하면서 남성무원은 공채입사 직원 중 사내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반면 여성무원은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병행하는 것은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채용관행 개선을 권고.	10. 27	검토 중
(주)○○의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주)○○ 울산공장이 남녀근로자 간에 기술, 학력, 자격증의 채용 요건이 동일함에도 생산직에는 모두 여성만을, 기능직에는 모두 남성만을 채용,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성별로 직종을 분리하고 임금에서도 기술, 노력, 작업조건, 책임의 측면이 유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을 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이므로 시정을 권고	10.27	검토 중



## □ 성희롱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논술학원 강사의 성희롱	기혼인 피진정인 서모씨가 회식자리에서 미혼인 진정인에게 성관계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한 것과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드러내고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 등을 성희롱으로 판단, 손해배상금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학원장에게는 피진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 재발방지책 마련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권고.	1. 28	검토 중
○○센터 과장에 의한 성희롱	신규 임용된 여성 직원에게 애인 하자고 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인 과장은 여성 직원의 유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권력관계와 당시 정황 등으로 미루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	4. 14	수용
용역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성희롱	용역경비업체 직원이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한 성적 언동에 대하여 비록 회사가 피진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용역경비업체의 업무는 회사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관계를 인정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	8. 25	일부수용
광고인쇄업체 사장의 직원 성희롱	사장이 피진정인이 업무용 웹하드에 게시된 음란성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진정인이라고 지목함으로써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주고 직장을 그만두게 한 것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9. 22	검토 중
여성 사장의 남성 직원 성희롱	여성 사장이 남성 직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는데도 팔짱을 끼거나 사랑한다고 하고,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진정인의 집 앞까지 와서 만나자고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금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9. 22	불수용

## □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비혼 단독 세대주에 대한 토지전용허가 불허	상수원보호 특별대책구역 내 토지전용 허가시 혼인하지 않은 단독 세대주에게는 부모 및 형제자매 등 세대 독립 이전의 원 가족 모두가 대상지역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이므로,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장은 독립한 단독 세대주에 대하여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 것을 권고.	3. 9	검토 중

## □ 임신·출산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	주식회사 ○○○○ 전무 및 실장들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후 복직하려는 홍보팀장인 진정인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팀원으로 강등하였으며 업무를 제한하는 직무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는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는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5. 19	검토 중

##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상업시설 임대 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 ○ 회가 매점을 임대하면서 직접운영이 불가능한 장애인, 고령노인 등에 대해서만 운영보조가 가능한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배우자의 임대신청 동의를 요구한 것은 혼자 살고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노인을 가족상황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 ○ 회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	12. 8	검토 중

## □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성전환자 성별 변경 시 인권침해	대법원이 제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성별변경 요건들이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장에게 동 지침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	10. 13	검토 중

## □ 장애 및 병력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소아당뇨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정인에게 차별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금 1,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3. 10	검토 중
특수학급 설치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2	일부수용
장애인등록증 접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중증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	7. 23	수용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할 것과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까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7. 23	일부수용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과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8. 8	수용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계약 차별	피진정인과 관련 보직교수에게 장애인 차별 관련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8. 18	불수용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권고	8. 27	수용
시각장애이용 음성 청각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교통수단이용 차별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	10. 1	검토 중
주인등록증 접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중증 시각장애인이 주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	12. 3	검토 중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 입출금기(ATM) 사용 제한	시각장애인이 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ATM과 향후 구입하는 ATM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12. 3	검토 중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과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을 권고	12. 3	수용
선거권 행사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12. 3	수용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불허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것과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12. 22	수용
환경부 고시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복지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12. 26	수용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상가를 접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	12. 26	수용

### □ 나이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수한 위계질서와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지시체계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장에게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각각 24세 및 26세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상한연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	4. 28	불수용
영어회화 강사의 나이로 이유로 채용 거부	모 대학 평생교육원이 영어회화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면서 진정한 나이가 너무 많아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였으나 위원회는 '고객의 선호'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	10. 27.	수용

### □ 출신국가 및 인종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응역의 공급이용 차별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산재근로자를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1. 14	검토 중
장애인 등록신청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7. 15	검토 중
아프리카인에 대한 상업 시설 이용 차별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상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8. 25	불수용

## □ 종교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 ○대학교 및 □ □대학교가 직원 또는 교수 채용 시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4. 14	불수용

## □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성적을 기준으로 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의 차별	○ ○고등학교가 자율학습 전용실의 입실자격을 성적우수자만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학습 전용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1. 14	수용
원아모집 시 교직원 자녀 우대로 인한 차별	대전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이 원아를 모집하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의 자녀에게 1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교직원 자녀가 아닌 아동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우대조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1. 14	수용
응시자격 제한으로 인한 차별	의왕시 ○ ○공단이 난방기능직 직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근무 또는 기능직 공무원 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 후 수행하게 될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	2. 18	수용
정당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공단 이사장이 진정한이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진정한을 별정직 전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과 「정당법」 에서 규정한 진정한의 권리를 근거 없이 제한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 ○공단 인사규정」 제47조를 「헌법」 제8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정할 것과 진정한에 대한 별정직 전환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을 권고	8. 25	검토 중
성적 기준의 정독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정독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독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정독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1. 28	수용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 ○인재숙 운영 전반에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과, ○ ○인재숙을 운영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 ○인재숙의 선별방식, 운영주체, 운영방법을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5. 19	수용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인권 및 평등권 침해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우수자반 제도를 시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현재 피진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적우수자 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5. 19	검토 중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강원도 내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부분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2006헌마1098,1116, 1117 병합)에 관한 의견제출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 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비명 제외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출.	7.25.	수용

### III 인권 관련 통계

#### 1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및 진정 통계<sup>5)</sup>

##### (1) 연도별 진정·상담·안내/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진 정	상 담	안 내 / 민 원	합 계
2008	6,309	16,301	30,043	52,653
2007	6,274	13,388	20,780	40,442
2006	4,187	10,737	19,558	34,482
2005	5,617	9,136	18,684	33,437
총 누계	35,163	63,889	121,971	221,023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임(상담은 면전진정 상담건수 포함).

##### (2) 연도별 상담 사례 분류

(단위 : 건, %)

구분 월	총 누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총 누계	51,573	100.0	20,863	40.5	5,316	10.3	25,394	49.2
2008	13,042	100.0	4,865	37.4	1,414	10.8	6,763	51.8
2007	10,684	100.0	4,428	41.4	1,041	9.7	5,215	48.8
2006	8,311	100.0	3,400	40.9	894	10.8	4,017	48.3
2005	7,738	100.0	3,205	41.4	921	11.9	3,612	46.7

※ 상담 후 진정접수 건수,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 등은 제외한 숫자임.

5) 『국가인권위원회 2008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3) 연도별 침해기관별 상담 사례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3,400	4,428	4,865
다수인보호시설	664	1,272	1,826
경찰	1,168	1,210	1,285
지방자치단체	352	466	499
기타 국가기관	510	617	351
검찰	264	288	228
기타 군사	147	171	184
기타 기관	2	119	167
구금시설	137	143	163
사법기관	83	91	90
보호시설	9	8	21
군검찰(군대/수사)	15	5	20
국정원	20	16	12
특별사법경찰	12	15	8
입법기관	8	3	6
군헌병	4	3	3
군구금시설	5	1	1
기무사			1

(4) 연도별 차별 사유별 상담 사례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894	1,041	1,414
장애	73	111	565
성희롱	298	364	384
사회적 신분	118	95	111
기타	112	127	92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나이	64	66	67
병력	44	45	33
성별	42	40	28
출신국가	23	46	27
학벌/학력	10	11	19
임신, 출산	23	21	18
전과	13	17	15
출신지역	9	10	13
용모, 신체조건	25	30	12
종교	8	13	9
가족상황	9	11	8
혼인 여부	13	13	5
사상, 정치적 의견	4	8	5
성적 지향	.	1	2
출신민족	4	5	1
피부색	.	2	.
인종	2	5	.

### (5) 연도별 진정사건 분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월	총 누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총 누계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타	%
총 누계	35,163	100.0	27,993	79.6	5,380	15.3	1,790	5.1
2008	6,309	100.0	4,892	77.5	1,380	21.9	37	0.6
2007	6,274	100.0	5,067	80.8	1,159	18.5	48	0.8
2006	4,187	100.0	3,334	79.6	824	19.7	29	0.7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6) 접수 경로별/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

월	분류	합계		우편/FAX		인터넷		대통령비서실		참여마당신문고		기타	
		합계	%	합계	%	합계	%	합계	%	합계	%	합계	%
총누계		41,514	100.0	11,038	26.6	28,155	67.8	305	0.7	1,952	4.7	64	0.2
2008		8,931	100.0	2,313	25.9	5,415	60.6	66	0.7	1,111	12.4	26	0.3
2007		8,843	100.0	2,057	23.3	6,199	70.1	25	0.3	550	6.2	10	0.1
2006		8,151	100.0	2,296	28.2	5,648	69.3	68	0.8	127	1.6	12	0.1

※ 총 누계는 2001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숫자임.

(7)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접수	종결	인용 사건								기각 이하			
			계	고발수사의뢰	징계권고	긴급구제	권고 및 합의 권고	합의 종결	법률구조요청	조정기초조사해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중지
2002이전	2,833	1,365	29	3	16	2	8	0	0	0	136	26	1,174	0
2003	3,041	3,137	94	9	3	2	57	23	0	0	717	116	2,210	0
2004	4,627	4,931	145	6	2	0	79	54	4	0	1,280	148	3,306	52
2005	4,199	4,132	244	6	6	1	156	73	2	0	1,318	147	2,378	45
2006	3,334	3,250	207	17	2	0	164	23	1	0	932	70	2,020	21
2007	5,067	4,757	239	13	16	0	147	61	2	0	1,215	116	3,152	35
2008	4,892	5,288	308	12	30	2	213	48	1	2	1,644	99	3,177	60
합계	27,993	26,860	1,266	66	75	7	824	282	10	22	7,242	722	17,417	213

※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 중 종결사건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7)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종결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기초 조사 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 중
합계	27,993	26,860	66	75	7	824	282	10	2	17,417	722	7,242	213	1,133
		100.0	0.2	0.3	.	3.1	1.1	.	.	64.8	2.7	27.0	0.8	
검찰	1,386	1,356	3	1	2	47	3	0	0	977	20	287	16	30
경찰	6,199	5,890	10	56	4	254	169	2	0	3,496	101	1,721	77	309
구급시설	11,929	11,576	2	11	0	178	33	7	0	7,199	528	3,557	61	353
보호시설	1,976	1,678	44	1	0	135	8	1	0	778	30	654	27	298
군대	541	513	4	1	0	26	8	0	0	408	4	58	4	28
기타국가 기관	5,962	5,847	3	5	1	184	61	0	2	4,559	39	965	28	115

(8)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고용에서의 차별(2,312건)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1,180건)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373건)		기타			
	채용	해고	모집	임금	기타	배치	승진	임금 외 금품	자 금 용 자	퇴직	정년	교육	재화	용역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 시설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접 수	02년	189	18	10	6	17	5	1	9	6	.	1	0	1	30	3	2	2	0	1	7	3	67
	03년	358	54	61	21	26	9	14	11	4	.	6	3	0	29	2	0	1	1	0	14	3	99
	04년	389	22	17	51	12	34	18	9	4	.	5	3	0	40	10	2	1	0	1	24	2	134
	05년	1,081	148	45	90	50	86	17	36	12	.	10	3	6	151	87	9	13	5	5	51	5	252
	06년	824	97	26	101	52	34	21	14	8	.	18	13	2	91	50	15	3	0	6	83	4	186
	07년	1,159	98	58	124	51	71	27	20	13	1	12	17	6	110	124	17	22	.	15	96	7	270
	08년	1,380	55	49	105	66	103	30	15	17	.	12	4	11	148	199	116	63	5	21	97	4	260
	계	5,380	492	266	498	274	342	128	114	64	1	64	43	26	599	475	161	105	11	49	372	28	1,268
	(%)	100	9.1	4.9	9.3	5.1	6.4	2.4	2.1	1.2	0	1.2	0.8	0.5	11.1	8.8	3	2	0.2	0.9	6.9	0.5	23.6
처 리	종결	4,898	470	261	459	251	304	120	106	57	1	59	40	22	539	404	114	77	8	38	347	26	1,195
	미결	482	22	5	39	23	38	8	8	7	0	5	3	4	60	71	47	28	3	11	25	2	73

(9)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성별	상회통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전과	성적 지향	병력	학력	기타		
접수	02년	189	11	2	6	33	7	48	5	20	.	2	2	.	1	1	1	4	7	4	10	.	25
	03년	358	34	1	5	18	24	75	2	19	1	4	4	15	2	.	.	7	3	2	16	28	98
	04년	389	25	.	8	54	57	64	6	10	.	6	7	4	4	.	.	7	1	7	12	117	
	05년	1,081	55	62	11	121	87	297	23	19	.	45	9	5	15	1	1	5	23	5	21	48	228
	06년	824	44	104	8	115	69	208	9	28	0	10	22	9	8	1	0	2	12	4	30	24	117
	07년	1,159	75	163	12	246	107	117	8	37	1	20	3	16	13	4	1	2	17	3	31	27	256
	08년	1,380	61	152	12	635	63	99	4	28	2	15	5	14	10	7	.	3	16	3	15	23	213
	계	5,380	305	484	62	1,222	414	908	57	161	4	102	52	63	53	14	3	23	85	22	130	162	1,054
	(%)	100	5.9	8.7	1.2	19.4	8.1	18.3	1.2	3	0.1	1.9	1	1.1	1.1	0.2	0.1	0.5	1.7	0.4	2.6	3.1	20.3
	처리	종결	4,898	292	437	56	977	387	867	56	148	4	98	50	57	50	12	3	23	80	21	123	155
미결		482	13	47	6	245	27	41	1	13	0	4	2	6	3	2	0	0	5	1	7	7	52

※ 2002년 통계는 2001년 11월 26일 ~ 2002년 12월 31일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10)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종결	인용			기각이하			
			권고	합의결 중	조정	기각	각하	이송	조중지
2002년 전	189	102	8	2	.	18	73	1	.
2003년	358	296	30	3	.	48	215	.	.
2004년	389	368	21	4	1	74	263	3	2
2005년	1,081	837	55	7	.	121	650	2	2
2006년	824	899	115	23	10	183	552	11	5
2007년	1,159	1,253	111	37	3	172	901	22	7
2008년	1,380	1,143	90	27	2	240	765	14	5
총계	5,380	4,898	430	103	16	856	3,419	53	21

※ 권고 : 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재발방지, 인권교육 등 권고

※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 2 청소년 부업(아르바이트) 인권상황 통계<sup>6)</sup>

### (1) 청소년들의 부업(아르바이트) 경험 빈도

(단위 : %)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특목고	대안학교	합계
있다	10.6	10.7	40.2	7.3	14.9	12.9
없다	89.0	89.0	58.5	90.9	85.1	86.6

### (2) 청소년들의 부업유형

(단위 : %)

	사무	전산	과외	가이트	고객 상담	주방보 조서빙	판매	배달	노무	청소	주유 및 운전	기타
응답률	2.2	10.8	3.2	1.1	5	14.5	12.4	11.3	9.1	4.8	1.1	29.8

### (3) 부업에 대한 생각

(단위 : %)

	꼭 하고 싶다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부에 전념하려 한다	모른다
응답률	22.6	51.0	15.0	11.4

### (4) 부업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단위 : %)

	계약서 작성	임금약속 위반	근로시간 약속위반	심야근무 강요	위험작업 강요	업주폭력	업주희롱
예	12.9	15.5	16.0	8.5	6.5	4.0	4.5
아니오	87.1	84.5	84.0	91.5	93.5	96.0	95.5

6)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6) 본 보고서에는 학교규칙을 비롯한 학교에서의 각종 인권 침해 경험, 급식 및 학교시설 등의 학교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3 노인 차별 인권상황 관련 통계7)

#### (1) 노인차별 경험

(단위 : %)

	내용		노인	비노인
1	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0	66.0
		가끔 그렇다	33.7	32.3
		자주 그렇다	3.8	1.7
		항상 그렇다	1.4	0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예: 노친네, 할망구)	전혀 그렇지 않다	61.3	54.5
		가끔 그렇다	31.9	41.5
		자주 그렇다	5.7	4.0
		항상 그렇다	1.0	0
3	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0.7	61.7
		가끔 그렇다	30.0	36.2
		자주 그렇다	7.7	1.7
		항상 그렇다	1.6	0.3
4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잘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9.7	56.7
		가끔 그렇다	31.4	39.0
		자주 그렇다	7.5	3.5
		항상 그렇다	1.4	0.9
5	아플 때 의사나 주변 사람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8.1	42.9
		가끔 그렇다	38.7	50.2
		자주 그렇다	9.9	6.3
		항상 그렇다	3.2	0.7
6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 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71.0	80.8
		가끔 그렇다	22.7	16.9
		자주 그렇다	4.9	1.9
		항상 그렇다	1.4	0.3

7)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06)

	내용		노인	비노인
7	성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83.2	87.0
		가끔 그렇다	14.4	11.8
		자주 그렇다	1.6	1.2
		항상 그렇다	0.8	0
8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2	35.2
		가끔 그렇다	29.1	58.1
		자주 그렇다	6.9	6.4
		항상 그렇다	0.8	0.3
9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 하거나 '몰라도 된다' 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7.5	53.6
		가끔 그렇다	32.4	41.6
		자주 그렇다	8.3	4.7
		항상 그렇다	1.8	0.2
10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인이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 내지 요청받지 못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3.1	38.4
		가끔 그렇다	33.7	49.2
		자주 그렇다	10.3	11.0
		항상 그렇다	2.8	1.4
11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 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배제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2.7	61.6
		가끔 그렇다	27.9	33.7
		자주 그렇다	7.3	4.7
		항상 그렇다	2.0	0
12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다방, 식당 등에 들어가면 주인이나 손님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4	67.4
		가끔 그렇다	19.7	28.3
		자주 그렇다	5.3	3.6
		항상 그렇다	1.6	0.7
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75.4	81.3
		가끔 그렇다	19.8	16.5
		자주 그렇다	3.8	1.9
		항상 그렇다	1.0	0.3

## (2)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생각

	내용	노인 경험빈도	비노인 경험빈도
1	노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3.09(±0.72)	3.14(±0.69)
2	노인은 능력에 상관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2.71(±0.76)	2.96(±0.67)
3	대중매체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적다(예: 무시하고 소외되는 모습이 빈번하다. 노인등장 인물이 적게 나온다 등)	2.72(±0.79)	2.92(±0.68)
4	일상에서 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예: 전자제품, 핸드폰 등)이 적다	2.55(±0.82)	2.90(±0.73)
5	노인이 즐길만한 문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82(±0.82)	3.08(±0.72)
6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2.79(±0.77)	3.11(±0.67)
7	노인이 되어 이혼 또는 재혼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거나, 혼자 사는게 땀땀하다	2.83(±0.87)	2.03(±0.81)

## (3) 노인차별에 대한 의견

내용		노인	비노인
우리 사회의 노인차별에 대한 정도	전혀 없다	2.0	0.5
	없는 편이다	18.7	5.9
	있는 편이다	52.3	59.1
	매우 있다	17.9	31.3
	잘 모르겠다	9.0	3.1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	노인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15.9	18.3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역할 상실)	38.4	43.6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28.7	30.9
	노인복지의 미비	23.2	30.7
	세대간 단절	18.3	34.9
	노인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	13.6	18.8
	대중매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5.7	11.3
	기타	6.5	3.8

내용		노인	비노인
노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일자리 마련, 노후소득지원	45.7	54.4
	허약노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26.6	16.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역할부여	23.6	40.8
	노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22.0	18.8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31.1	43.9
	경로효친 사상의 확대	22.8	17.2
	기타	4.3	1.4

#### 4 독거노인 인권상황 관련 통계<sup>8)</sup>

##### (1) 독거노인의 표본 분포

(n=422)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	서울	149	35.3
	대전	81	19.2
	대구	102	25.2
	광주	90	21.3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100	23.7
	아니오	322	76.3
성별	남성	65	15.4
	여성	357	85.6

8) 200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본 보고서에는 독거노인,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노숙인, 구급시설 수용자를 중심으로 한 인권상황실태조사 내용을 담고 있음



## (2) 독거 시작 시기

(n=422)

구 분		빈도(명)	비율(%)
독거시작시기	1년 전	12	2.8
	2~3년전	41	9.7
	5년이상	74	17.5
	10년이상	295	69.9
합계		422	100.0

## (3) 독거노인의 자녀유무 및 접촉 빈도

(n=422)

구 분		빈도(명)	비율(%)
자녀	있다	317	75.1
	없다	97	23.0
	무응답	8	1.9
자녀와의 접촉빈도 (n=317)	왕래가 없다	52	16.0
	1년에 한 번	62	19.1
	6개월에 한 번	68	20.9
	2-3개월에 한 번	55	16.9
	한 달에 2-3번	88	27.1

## (4) 독거노인의 경제활동

(n=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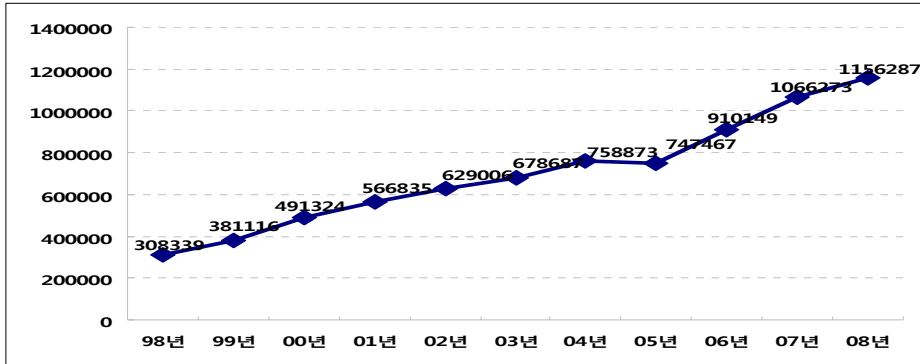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비율(%)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한다	31	7.3
	경제활동을 안 한다	391	92.7
경제활동 영역 (n=31)	공공근로	14	45.2
	경비	3	9.7
	판매종사	1	3.2
	가게/식당보조	4	12.9
	기타	9	29.0

(5) 스트레스 우선순위(중복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스트레스우선순위	건강문제	300	36.6
	경제문제	229	27.9
	외로움/고독의 문제	144	17.6

5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통계<sup>9)</sup>

(1) 이주민 전체의 연도별 증감 추이



출처 : 법무부 2008.08

(2) 취업자격별 이주노동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예체능인력
총체류자	556,746	31,886	519,930	4,930
합법체류자	496,580	31,007	462,114	3,459
불법체류자	60,166	879	57,816	1,471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8. 10)

9) 200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 (3)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556,746	496,580	60,166
필리핀	33,149	25,914	7,235
중국(한국계)	308,598	300,065	8,533
중국	25,413	16,203	9,210
베트남	47,055	37,846	9,207
기타	142,531	116,552	25,981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08. 10)

### (4) 이주노동자의 직업 유형

(n=187)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 직업	공장노동자	119	63.6				
	건설노동자	16	8.6				
	어부, 수산업노동자	2	1.1				
	농림축산업노동자	5	2.7				
	식당, 주방, 청소	9	4.8				
	간병인	3	1.6				
	가정부, 파출부	12	6.4				
	기타	20	10.7				
	무응답	1	0.5				
일주일 노동시간	40시간 미만	34	18.2				
	40시간이상 ~ 50시간미만	30	16.0				
	50시간이상 ~ 60시간미만	49	26.2				
	60시간이상 ~ 70시간미만	17	9.1				
	70시간이상 ~ 80시간미만	35	18.7				
	80시간 이상	14	7.5				
	무응답	8	4.3				
평균	55.95	표준편차	20.51	최소값	0 시간	최대값	98시간

(5) 이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n=381)

구 분		빈도(명)		비율(%)			
체류자격	합법체류	293		76.9			
	불법체류	80		21.0			
	무응답	7		1.8			
체류기간	2년 미만	144		37.8			
	2년이상 ~ 5년미만	107		28.1			
	5년이상 ~ 8년미만	48		12.6			
	8년 이상	72		18.9			
	무응답	10		2.6			
평균	50.46개월	표준편차	46.966	최소값	1개월	최대값	250개월

(6) 이주노동자의 한국체류자격 및 거주기간

(n=187)

구 분		빈도(명)		비율(%)			
체류자격	합법체류	108		57.8			
	불법체류	78		41.7			
	무응답	1		0.5			
거주기간	2년 미만	57		30.5			
	2년이상 ~ 5년미만	58		31.0			
	5년이상 ~ 8년미만	26		13.9			
	8년이상	41		21.9			
	무응답	5		2.7			
평균	57.77	표준편차	51.06	최소값	1개월	최대값	250개월

(7) 이주노동자의 한국생활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한국생활	3.35	.795
이웃과의 관계	3.49	.876
고용주와의 관계	3.42	.849
직장동료와의 관계	3.34	.885

(7)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작업량	2.99	.933
임금	2.85	.988
급식	3.03	.908
작업장 안전도	3.16	.991
숙소시설	2.94	1.023
의료혜택	2.91	1.186
고충처리	2.90	.949
오락시설	2.94	1.007
고용기간보장	3.06	1.029

(8)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에서 폭력 경험 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구타, 폭력 유무	예	66	35.7
	아니오	119	64.3
합계		187	100

(9)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경험한 폭력 유형

직장에서 경험한 폭력 종류	예	아니오	합계
언어 폭력	55 (83.3)	11 (16.7)	66 (100.0)
신체적 폭력	10 (15.2)	56 (84.8)	66 (100.0)
성적 폭력	3 (4.5)	63 (95.5)	66 (100.0)

(10) 이주노동자의 직장에서 경험한 폭력 경험 횟수

구분		빈도(명)	비율(%)
폭력 경험 횟수	1주 1 - 2회	23	34.8
	1개월 1 - 2회	14	21.2
	1년 1 - 2회	12	18.2
	기타	17	25.8
합계		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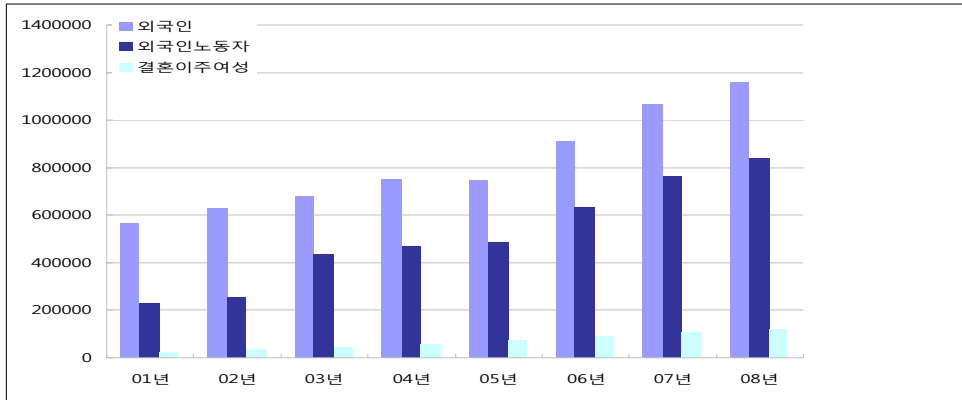
(11) 이주노동자의 직장에서 경험한 폭력에 대처한 방법

구분		빈도(명)	비율(%)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싸워서 해결	9	14.5
	직장 나와 도망감	8	12.9
	그냥 참고 견딤	26	41.9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함	5	8.1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신고	9	14.5
	경찰에 신고	0	0
	기타	5	8.1
합계		62	100

\* 무응답 4명

## 6 결혼이주여성 인권 관련 통계<sup>10)</sup>

### (1) 이주민의 연도별 증감 추이



출처 : 법무부 200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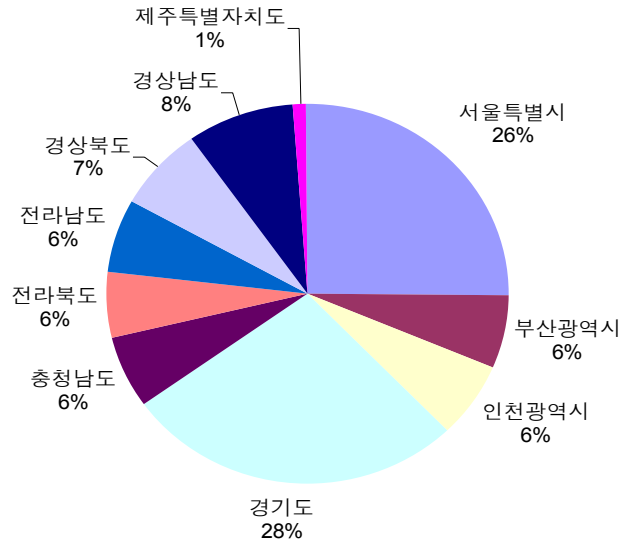
### (2) 국제결혼추이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8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혼인,이혼편)]

10) 200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 (3) 결혼이주여성의 지역별 분포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시군구별 외국인과 혼인)] (2008)

### (4)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 분포

(단위 : 명, %)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
105,028	30,941	27,293	24,620	4,968	5,349	2,731	2,263	1,955	4,908
(100%)	(29.4%)	(25.9%)	(23.4%)	(4.7%)	(5.1%)	(2.6%)	(2.2%)	(1.9%)	(4.7%)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8. 08)



(5) 이주민의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문화

구분		빈도(명)	비율(%)
1순위	남성중심의 가부장문화	127	35.7
	음식 및 식사에절문화	43	12.1
	남의 일에 지나친 관심	58	16.3
	연장자 중심의 문화	31	8.7
	빨리빨리 문화	80	22.5
	기타	17	4.8
2순위	남성중심의 가부장문화	46	14.3
	음식 및 식사에절문화	60	18.6
	남의 일에 지나친 관심	77	23.9
	연장자 중심의 문화	45	14.0
	빨리빨리 문화	69	21.4
	기타	25	7.8

(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한국생활	3.50	.857
남편과의 관계	3.49	1.253
가족과의 관계	3.54	1.031
이웃과의 관계	3.48	.846
고용주와의 관계	3.56	.873
직장동료와의 관계	3.56	.884

(7) 남편의 구타, 폭력 경험 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구타, 폭력 유무	예	39	20.2
	아니오	154	79.8
합계		193	100.0

\* 1명 무응답

(8)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남편의 폭력 유형

남편으로부터 경험한 폭력 유형	예	아니오	합계
언어 폭력	24 (63.2)	14 (36.8)	38 (100.0)
신체적 폭력	25 (65.8)	13 (34.2)	38 (100.0)
성적 폭력	6 (15.8)	32 (84.2)	38 (100.0)

\* 1명 무응답

(9) 이주민(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포함) 응답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차별감	2.37	.8123
향수병	2.81	.8208
지각된 증오감	2.19	.8032
두려움	2.01	.7259
문화충격	2.42	.8329
죄책감	2.07	.9108
기타	2.46	.7220
전체평균	2.37	.6363

(10) 이주민 전체 응답자의 한국생활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한국생활만족도	3.43	.829

## 7 전국 노숙인 인권 관련 통계<sup>11)</sup>

### (1) 2000년 이후 전국노숙인의 규모

(단위 :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계	5,046	4,838	4,439	4,540	4,466	4,722	4,856	4,544	4,448
쉼터	4,601	4,321	3,769	3,612	3,497	3,763	3,563	3,363	3,163
거리	445	517	670	928	969	959	1,293	1,181	1,285

\* 출처: 보건복지포털

### (2) 노숙시작년도

구분	빈도(명)	비율(%)
1980년 이전	7	1.9
1981-1990년	9	2.4
1991-2000년	64	17.1
2001-2003년	60	16.0
2004-2006년	117	31.2
2007년 이후	95	25.3
무응답	23	6.1
합계	375	100.0

11) 200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 (3) 노숙생활스트레스

<표 5. 12>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잠잘 곳 마련하기	362	<b>2.95</b>	1.428
세면/샤워 공간 찾기	359	<b>2.63</b>	1.322
물품 보관 공간 마련하기	359	<b>2.72</b>	1.469
신체질환으로 인한 고통/치료비 문제해결하기	359	<b>2.49</b>	1.422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치료비 문제해결하기	353	<b>2.10</b>	1.374
끼니마다 식사 제공하는 곳 찾기/식사 마련하기	361	<b>2.66</b>	1.325
주민등록증 복원을 위한 비용마련/주소지 확보하기	356	<b>2.29</b>	1.380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기	358	<b>2.91</b>	1.378
동반 노숙가족(자녀)의 안전 확보하기	189	<b>1.61</b>	1.054
원(헤어진 혹은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 관계로 인한 고통해결하기	348	<b>2.26</b>	1.447
노숙인들과의 갈등/문제 해결하기	356	<b>2.06</b>	1.192
행인/비노숙인들과의 갈등/문제 해결하기	358	<b>1.97</b>	1.185
이용하고 있는 보건/복지시설 직원들과의 갈등/문제 해결하기	355	<b>1.80</b>	1.104
공안요원이나 경찰과의 갈등/문제해결하기	357	<b>1.90</b>	1.241
폭력/범죄의 위협에서 안전 확보하기	357	<b>2.00</b>	1.199
법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해결하기	357	<b>2.08</b>	1.264
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358	<b>2.17</b>	1.333
여가시간 보내기	344	<b>2.30</b>	1.212
앞으로 살아갈 방법 찾기	349	<b>3.20</b>	1.415
기타	32	<b>2.00</b>	1.368

\* 1-전혀 없다, 5-아주 심하다

## IV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및 콘텐츠 소개

### □ 인권교육자료

	<p>『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2005)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시민의식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담은 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학년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으로 배우는 권리’ ‘우린 다르지만 소중해요’ 등 총26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고학년 프로그램으로는 ‘엿보지 마세요. 엿듣지 마세요’ ‘소비자 권리’ ‘아직 무죄예요’ 등 총43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집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실천시범학교 및 현장 교사들로부터 검증과 호응을 거친 프로그램들이다.</p>
	<p>『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2005) 중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집으로 인권의 세대적 발전 목록을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풍부한 내용과 중학생의 감수성을 존중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인권의 발전 역사,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그리고 약자들의 인권이야기를 비롯하여 인권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등 총 28가지의 단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p>
	<p>『사람이 곧 하늘이다』 (2005) 고등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집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적 욕구와 수준에 맞게 헌법속의 인권규정, 현실과의 대화, 원탁토론, 소시오드라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작은 권리 지키기’ 등 총31개의 단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p>
	<p>『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ABC Teaching Human Rights』 (2006) 유엔의 초·중등 인권학습활동 안내서의 번역서로 인권교육의 원칙, 초·중등과정에서 배워할 인권교육 주제들을 담고 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뢰와 사회적 존중, 규칙정하기 등 9개의 주제를 선정해두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차별, 개발, 유엔, 인권공동체, 우리 학교 인권온도 측정하기 등 16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p>

	<p>『2005년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2005)  2005년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는 학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문예작품을 함께 공모했다. 총8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인권프로그램을 실시한 ‘인권이 숨쉬는 교실에서 쑥쑥 자라는 어린이’ ‘&lt;교실&gt; 인권의 숲이 되다’. 인권 나부터 지킬게요 등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실천 되었으며, 본 사례집에 수록되어있다.</p>
	<p>『2006년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2006)  2006년 인권교육실천사례 공모는 학교분야와 시민단체분야로 나누어 공모되었으며, 학교분야는 8개 프로그램, 시민단체분야는 3개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학교분야의 주요프로그램으로는 ‘너나들이의 인간애를 찾아 떠난 인권여행기’ ‘인권하고 신나게 놀자’ ‘인권의 눈으로 사회수업 조작하기’ ‘초등6학년 교과서속 인권 내용으로 더불어 사는 법 배우기’ ‘수행평가 &lt;세계인권선언&gt; 해설서 만들기’ 등이 선정되었으며, 본 사례집에 수록되어있다.</p>
	<p>『2007년도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2007)  2007년도 인권교육실천사례 공모는 학교분야와 시민단체분야로 나누어져 공모되었으며, 본 사례집에는 학교분야 9개 프로그램과 시민단체 2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있다.  학교분야 실천사례 프로그램으로는 ‘연극영화매체를 이용한 학생노동관련 인권교육사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인권신장사례’, ‘토론과 동화를 통한 사랑 감전 프로그램’, ‘장애인 도서를 활용한 NIE 인권교육’ 등 학교현장에서 직접 실천하여 교육적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p>
	<p>『2008년도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2008)  2008년도 실천사례는 다문화 이해교육, 장애인인권교육, 아동인권, 인권 친화적 학급운영분야로 공모되었다.  다문화 이해교육분야는 유아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 ‘먼 곳에서 온 이웃’ 장애인인권교육분야로는 ‘사랑나눔미들의 아름다운 무한도전’, ‘나와 다르지 않은 너’, 그리고 우리 아동인권분야로는 ‘신문 활용교육(NIE)을 통한 도서관 인권교육’ ‘인권 행복입니다. 평화입니다’ 인권친화적 학급운영분야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인권교육 실천사례’와 ‘별별이야기를 활용한 인권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이 프로그램들의 실제 활용방안들이 소개되어있다.</p>

□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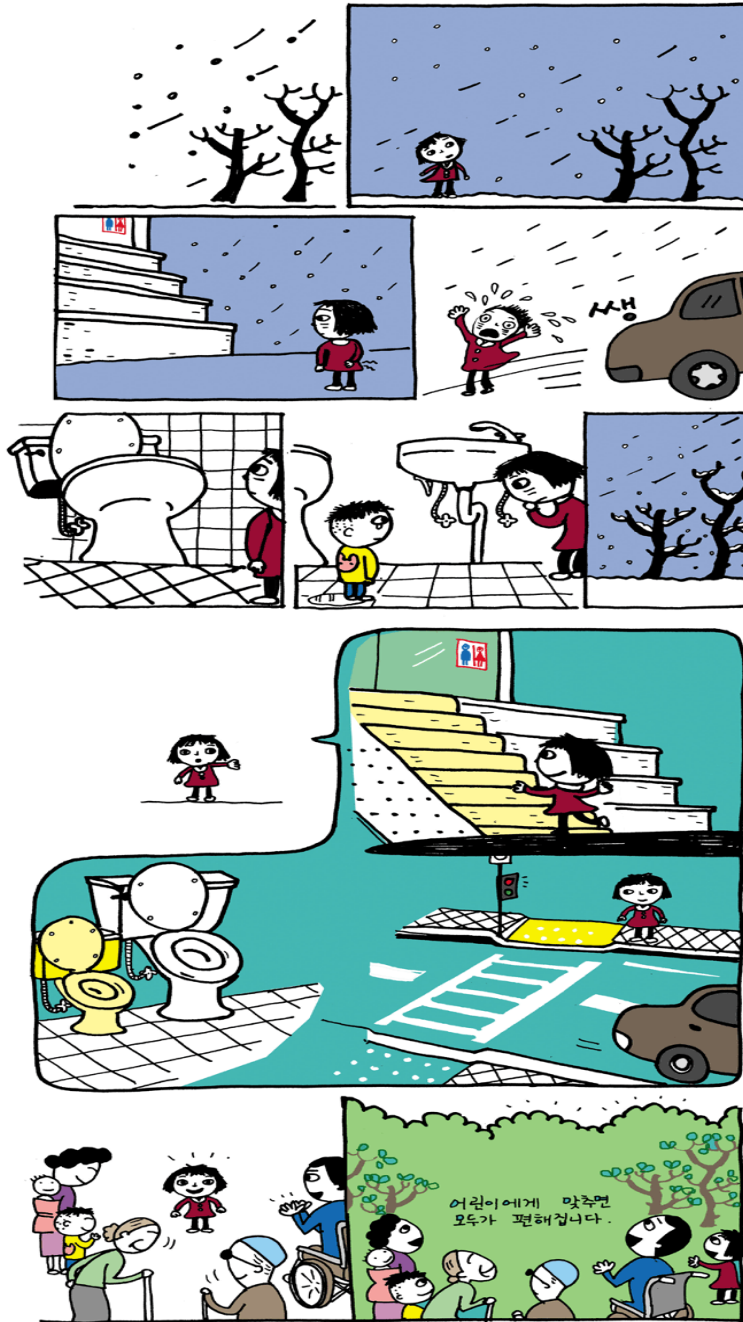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는 애한테  
무슨 일을 또 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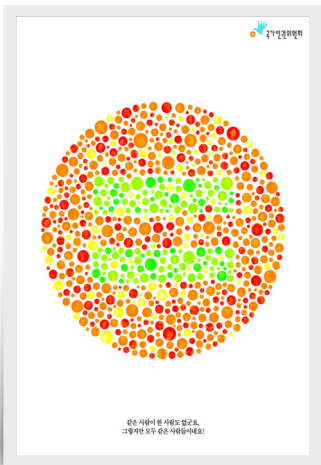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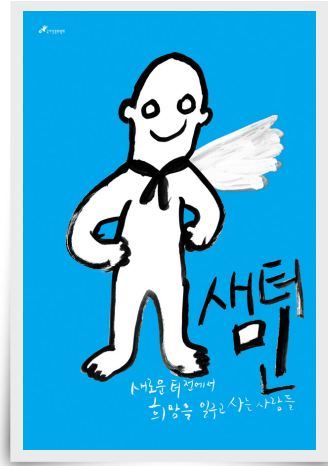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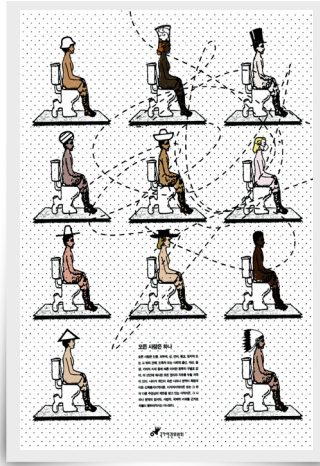
#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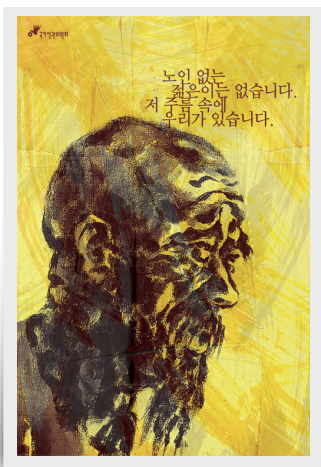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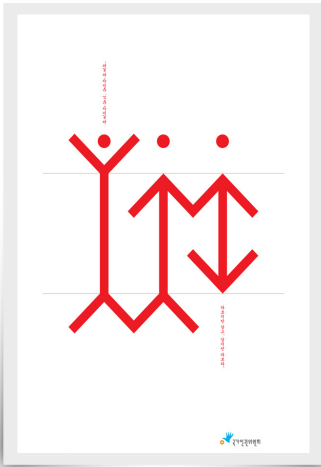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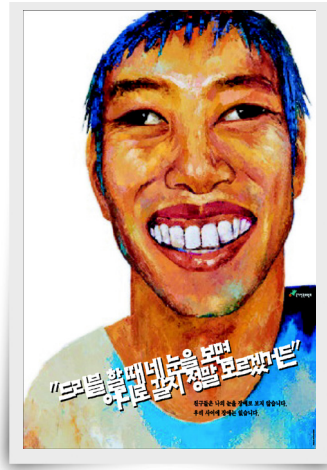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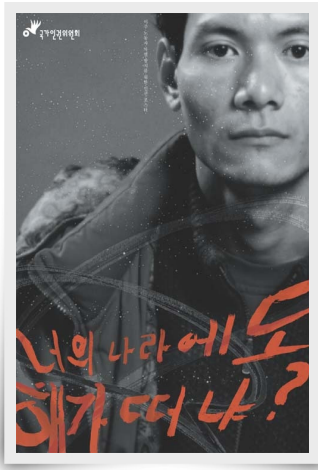
류 승화





□ 포스터





## □ 애니메이션



### 낮잠 | 감독 : 유진희

바로와 아빠가 한 여름날 낮잠을 자고 있다. 평화롭고 달콤한 잠속에서 바로는 아빠와 볼장구를 치고 있다. 바로의 손장난을 따라하던 한 아이가 바로의 몽롱한 손을 보고 놀라 소리친다. 바로는 유치원에 가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한다. 마침내 바로를 손짓하는 유치원을 찾지만 오르기엔 너무 높은 곳이다.



### 동물농장 | 감독 : 권오성

양들이 사는 농장에 염소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양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염소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어느 날 염소는 양들이 흘려놓은 털을 몰래 모아 뜨개질을 시작한다. 코피가 떨어지는 노력 끝에 양털 옷은 완성되고 양옷을 입은 염소는 마침내 양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지만..

### 그 여자네 집 | 감독 : 김준, 박윤경, 이진석, 장형운, 정연주

언제나처럼 종숙은 남편과 자신의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친정어머니가 팔을 다쳐 아이를 봐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종숙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지 못해 출근을 포기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또다시 빈둥거리기만 할 뿐. 참다 못한 종숙은 청소기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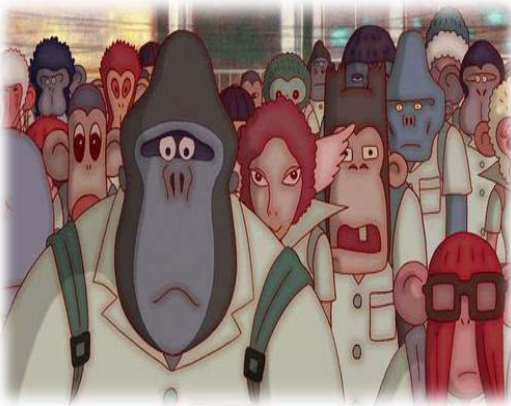




**육다골대녀(肉多骨大女) | 감독 : 이애림**  
 큰 머리, 큰 뼈, 많은 살을 가진 막내의 외모는 고조에서 증조로 그리고 조부모에서 부모로 내려져 온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막내는 그리 행복하지 않다. 외모로 평가되는 사회는 막내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다른 무기를 강요하고, 막내의 울화통은 터져버리고 만다.

**자전거 여행 | 감독 : 이성강**

비오는 거리, 어디론가 달릴 준비를 하는 자전거. 그러나 그 위엔 아무도 없다. 자전거는 동네 입구를 돌아 초록 대문을 밀고 들어선다. 자전거는 집 안을 둘러본 후 다시 어느 공장으로 향한다. 천천히 바퀴를 움직일 때마다 자전거의 기억들이 펼쳐진다.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장소, 어려움을 함께 나눈 친구들..



**사람이 되어라 | 감독 : 박재동**

공부만을 강요하는 사회에 사는 원철이와 친구들은 고릴라의 모습이다. 어느 날 원철이는 숲에서 하늘소, 사슴벌레 등을 만나고 곤충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 뒤 사람의 얼굴로 학교에 나타난 원철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란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대학에 가야만 사람이 된다고 옛날로 돌아가라고 한다.



**세 번째 소원 | 감독 안동희·류정우**

어느 날, 시각장애자인 명선에게 소원실행 위원회의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나타나고, 요정은 어서 소원을 이뤄주고 일찍 퇴근하고 싶은 욕심으로 명선에게 빨리 소원을 얘기하라고 다그치지만, 명선은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 외의 다른 소원은 필요치 않다. 어쩔 수 없이 명선의 하루에 동행하게 되는 요정. 요정은 처음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명선이 답답하기만 한데,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명선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영겁결에 두 가지 소원까지 날아가버리고, 이제 마지막 소원 하나만 남은 상황, 명선은 무슨 소원을 부탁할지 고민하며 밝은 길을 걸어간다.



**아주까리 | 감독 홍덕표**

내복을 막 입기 시작한 초겨울, 준이네 엄마 아빠가 모여 심각한 토론을 벌인다. 아빠는 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첫눈 오는 날, 준이를 포경수술 시키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엄마는 그보다는 준이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막무가내인 아빠의 주장은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왜 꼭 아픈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준이는 괴롭기만 하다. 드디어, 첫눈이 내리고 아빠는 준에게 포경수술을 시키기 위해 집으로 뛰어온다. 아빠를 막으려는 엄마와 준이를 데려가려는 아빠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드디어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 그 동안 숨겨진 아빠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 ...



**아기가 생겼어요 | 감독 이홍수, 이홍민**

출산을 앞둔 은수는 그 설렘을 느끼기도 전에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고민에 빠진다. 직장상사는 출산휴가를 내려는 은수에게 대놓고 퇴직을 들먹이고,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는 주변 친구들의 꼬드김에 라스베가스행을 꿈꾸며 은수에게 전설의 안마사가 있다며 여행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눈치. 육아문제를 두고 사방의 적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그녀에게 갑작스런 산통을 찾아오고, 은수는 앰블런스에서 직장상사와 시어머니를 조우하게 된다.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은수가 찾은 선택은?

**샤방샤방 샤랄라 | 감독 권미정**

똑똑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은진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언제나 쫄쫄 땀은 머리를 하는 것은 사실 은진의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기 때문이고, 그건 펠리핀에서 온 엄마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사랑하지만 친구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엄마, 학부모회의 날이 다가오면서 은진은 점점 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급기야 은진은 곱슬머리가 샤방샤방 샤랄라한 긴 생머리로 변해 기뻐하지만 엄마를 잃어버린다. 악몽을 꾸는 것이다. 마침내 학부모회의 날 아침, 엄마에게는 아직 학부모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한 은진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메리 골라스마스 | 감독 정민영**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산타들.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소박하고 뜻 깊은 선물을 고민하지만 요즘 아이들 취향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 그런 와중에 진짜 산타클로스 선발 이벤트 광고를 보게 된 산타들은 그 행사에 참가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확보하려는데... 모두들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진짜 산타의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어리숙한 가짜 산타가 진짜 산타로 선발되고, 낙방한 진짜 산타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러 썰매를 타고 떠난다.



## □ 영화

NO.472 스페셜 무비 에디션 | 09.06.18



2003년 <여섯 개의 시선>을 시작으로 2009년의 <시선 1318>까지, 네 편의 옴니버스 영화와 두 편의 옴니버스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킨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화 프로젝트 '시선 시리즈'. 지난 7년간 척박한 환경에서도 곳곳이 결실을 맺어온 이 시리즈가 일으킨 변화는 놀랄 만큼 크다.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를 꼬집어 준 날카로운 시선들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다. 그들의 문제 제기가 현실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기사 | 박혜은(영화 저널리스트), 구성 | 네이버영화  
세상을 바꾸는 시선, 인권영화 프로젝트

### ● 수많은 차별, 알고 계십니까?

인권 문제는 딱딱하고 어렵고 투쟁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인권영화 프로젝트 '시선 시리즈'의 주제는 차별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종종 남과 다른 '차이'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라져야 할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으로 규정한 큰 범위의 차별 사유만 해도 19개나 된다.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해 온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있다. 1. 성별 2. 종교 3. 장애 4. 나이 5. 사회적 신분 6. 출신 지역 7. 출신 국가 8. 출신 민족 9. 용모 등 신체조건 10. 혼인 여부 11. 임신 등 출산 여부 12. 가족 형태나 상황 13. 인종 14. 피부색 15.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16.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7. 병력 18. 성적지향 19. 학력에 의한 차별. 이것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반인권적 차별들이다.

“다들 너 미쳤냐고 했죠.”(웃음) 2002년 인권영화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하고, 지금껏 시선 시리즈의 프로듀서를 맡아 온 인권위의 남규선 팀장의 말이다. 당시만 해도 ‘인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문제처럼 여겨지던 시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감옥, 고문, 체포 같은 공권력의 탄압을 떠올리던 때였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 문제를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을 찾다가 '인권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실로 무모한 도전이었다. 남규선 프로듀서는 “처음엔 모든 것이 지뢰밭”이었다고 회상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다. 하지만 박광수 박찬욱 여균동 임순례 정재은 박진표 등 여섯 명의 '한국 대표 감독'이 인권위원회의 취지에 선뜻 동의하면서, 모두들 말렸던 무모한 도전은 <여섯 개의 시선>(03)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 ● 무모한 도전, 놀라운 결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소개된 인권위의 첫 장편영화인 임순례 감독의 <날아라 펭귄>(09)까지 포함하면 지난 7년간 총 7편의 인권영화가 제작되어 관객과 꾸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인권영화 프로젝트를 이어올 수 있을지는 몰랐다. 부족한 예산 속에서, 개런티는 고사하고 자비를 써가면서 인권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41명의 감독님들과 수백 명의 배우, 스태프들의 힘이다. 그리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 준 관객들의 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사소하게 흘러 넘겼던 인권 문제부터 사회적 이슈가 된 충격적 사건까지, 다양한 차별 문제를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낸 '시선 시리즈'는 우리 사회의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인권영화 프로젝트 팀은 올해 기쁜 소식을 접했다. 지금까지 개봉된 인권영화의 시나리오가 2010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다는 것. <시선 1318>(09)에서 김태용 감독이 연출한 <달리는 차>의 시나리오는 '다문화의 이해' 부분에 수록되고,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05)의 <그 여자네 집>이 국어 교과서 중 '여성에 대한 이해' 부분에 실리고, <다섯 개의 시선>(06)의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와 <별별 이야기>의 <낮잠>은 '장애에 대한 이해' 부분에 수록될 예정이다.

남규선 프로듀서는 "가끔씩 학교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받는다. 한 선생님은 자신의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 시간에 인권영화 프로젝트를 한 번씩 보여준다고 하셨다. 이 영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인권 교육을 했을지 걱정이라는 말씀도 듣는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영화 프로젝트 시나리오가 교과서에 실린다는 건 정말 즐겁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관심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여섯 개의 시선>은 일본 전역에서 극장 개봉을 했고, 호주 등 해외 TV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권위의 예산 감축이 진행되면서 자칫 인권영화 프로젝트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규선 프로듀서는 "국가 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감축되면 제작이 중단될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인권영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을 쉽고 가깝게 전달하자는 첫 번째 목적은 이룬 것 같다. 두 번째 목표는 인권영화 프로젝트를 통해 영화인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었다.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그 목표도 이룬 셈이다. 마지막 목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인권영화를 만들고 개봉할 때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 2003년 <여섯 개의 시선>\_광화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 ❖ 시선 1 \_ 용모와 신체 조건에 의한 차별

2003년 11월14일 개봉한 <여섯 개의 시선>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외모지상주의를 꼬집은 <그녀의 무게>(임순례 감독)와 <얼굴값>(박광수 감독), 장애우의 이동권을 다룬 <대륙횡단>(여균동 감독), 과도한 영어 교육의 병폐를 재치 있게 고발한 <신비한 영어나라>(박진표 감독), 성 범죄자 인권을 고민하는 <그 남자의 사정>(정재은 감독), 충격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를 그린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박찬욱 감독)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무게>는 취업을 위해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실업계 여고생의 '취업 분투기'를 통해 외모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다루고 있다. 사실 이력서에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업무 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기재했던 관례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인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폐지 노력이 있었다.

한 예로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센티미터와 몸무게 57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센티미터와 몸무게 47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2008년 폐지되었다.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요청한 것. 2004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던 한 남성은 신체 검사에서 키가 167.8 센티미터로 측정되어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다음해 3월 다시 측정을 했더니 166.8센티미터로 나와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도 했다. 0.2센티미터 차이로 경찰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2005년 4월 인권위는 키, 몸무게 제한 규정이 차별이라며 폐지를 권고했고, 결국 3년 만에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 ❖ 시선 2 \_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

<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이 빚은 충격적 실화를 공개했다.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찬드리 쿠마리 쿠룽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 6년 4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 것.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금의 이유였다.

한국의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산업 연수생 제도'는 실제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노동자의 노예 제도'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2002년 8월부터 "보다 당당하게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 3권과 사회 보장을 포함하는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며 산업 연수생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해왔다. 그 결과 2007년 1월부터는 산업 연수생 제도가 모두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남규선 팀장은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외국 인력 없이는 중소기업 유지가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크다. 100만 외국인 시대에 맞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청년 김문주 씨의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대륙횡단>은 드라마틱한 결말을 이끌어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김문주 씨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다 잡혀간 친구를 생각하며 광화문 1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눈물 겨운 시위를 벌인다.

과거엔 광화문 사거리에서 지하보도나 육교를 통해 건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아니다. 광화문 4거리에 횡단보도가 생긴 것이다. 남규선 팀

장은 <대륙횡단>이 엄청난 변화의 씨앗이 되었음을 확신한다. "실제로 광화문에서 촬영을 했는데, 건널목 하나 없는 넓은 도로를 김문주 씨가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촬영 스태프들이 다 울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하보도나 육교로 다녔던 이 길이, 장애인들에게는 대륙 횡단만큼이나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걸 느낀 거다. 장애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느끼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 결과 우리도 광화문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

● 2006년 <다섯 개의 시선>\_가난한 나라의 동포는 동포가 아니다?



❖ 시선 3 \_  
장애에 의한 차별

다운증후군 소녀 은혜의 일상을 통해 장애 청소년의 교육 권리를 되새기게 만든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박경희 감독),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남성성을 블랙코미디로 그린 <남자니까 아시잖아요?>(류승완 감독), 탈북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을 섬세하게 담은 <배낭을 멘 소년>(정지우 감독), 운동권 학생과 수사관이 벌이는 웃지 못 할 코미디 <고마운 사람>(장진 감독), 2003년 종로에서 동사한 중국 동포의 자취를 좇는 <종로, 서울>(김동원 감독) 등 5편의 단편영화가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 ❖ 시선 4 \_ 장애 청소년 교육에 대한 차별

다운증후군 소녀 은혜는 씩씩하다. 같은 반 친구들이 아무리 놀려도, 학교 가기 싫을 만큼 따돌림을 당해도, 씩씩하게 학교를 다닌다. 좋아하는 플루트도 씩씩하게 배운다. 은혜와 친구가 된 동네 아줌마가 은혜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자, 은혜는 아줌마를 이렇게 타이른다.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

영화에서처럼 장애인,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에 못 오게 하는 등의 문제는 인권위의 권고를 통해 차츰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 청소년 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차별이 있는 경우 인권위가 시정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차별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어, 기존의 법 제도보다 훨씬 강력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차이를 감싸 안는 은혜 같은 넓은 마음이 아닐까.



## ❖ 시선 5 \_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

2003년 겨울, 서울 종로의 길가에서 동사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길을 잃은 중국 동포 김원섭 씨는 추위에 떨며 거리를 헤매다 112와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길에서 세상을 떠났다. 우리 사회는 그를 '동포'가 아닌 '불법체류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면서, 해외의 동포들도 한국에서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잘 사는 나라 미국과 일본의 동포들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가난한 나라의 동포는 제외되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차별하는 이 제도 때문에, 중국 동포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종로, 겨울>을 촬영하던 2004년엔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사회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마침내 2004년 말 중국 동포가 재외동포법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방문 취업제를 도입해 중국 동포들에게 5년 기한의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난한 나라의 동포들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 2006년 <세번째 시선>\_다시 비정규직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고향에선 알아주는 '잠수왕'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목욕탕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아이러니를 그린 <잠수왕 무하마드>(정운철 감독),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기자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로 세상을 떠난 소녀 가장의 비극 <소녀가 사라졌다>(김현필 감독), 현실과 판타지를 오가며 가정 내의 고질적인 양성 평등을 이야기한 <당신과 나 사이>(이미연 감독), 흑인 여자친구를 사귀 초등학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종 차별을 꼬집은 <힘난한 인생>(노동석 감독), 두 겹의 억압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 성적 소수자의 일상 (김곡, 김선 감독), 비정규직 노동자의 슬픈 현실을 가감 없이 그린 <나 어떡해>(홍기선 감독) 등의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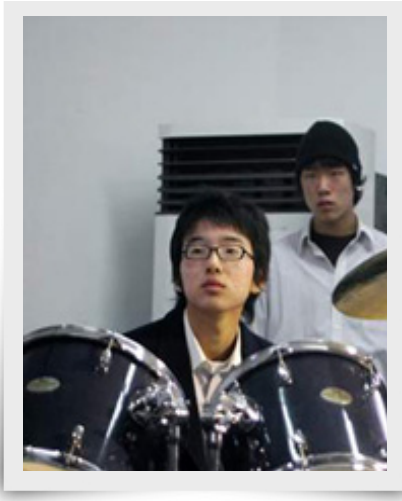
### ❖ 시선 6 \_ 성별과 임신 등 출산 여부에 의한 차별

결혼하면 여자는 살림을,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 이 고정관념의 시작은 알 수 없지만, 많은 가정 안에서 고착화된 '성 역할'에 의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 생활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 <당신과 나 사이>는 이러한 '가정 내 성 역할 차별'을 날날이 파헤치며 질문을 던진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해 사회적 양성 평등, 특히 출산이나 육아 문제에 있어서 꾸준히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선 아직도 부족한 상태. 법적으로 규정된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아예 암묵적인 퇴사를 강요받는 여성도 많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저출산 국가인 만큼 제도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가족 구성원인 남성의 의식 변화다. 남규선 팀장은 "스웨덴의 경우 일정 기간 남성들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남성들의 육아 휴직율을 높인 사례가 있다. 영화가 꼬집고 있는 것처럼, 양성 평등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문제보다 인식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 ❖ 시선 7 \_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사랑까지 '죄'로 취급받는 사회에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이 있다. <Bomb! Bomb! Bomb! >은 청소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권이 얼마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 되새기게 한다.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는 2001년 인권위 법에 처음 등장했다. 개인이 성적으로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1년 이후 인권위의 진정 조사와 권고 과정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내 동성애 차별 조항이 존재했지만, 인권위가 시정 권고하면서 3년 만에 사라졌다.

그러나 인권위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한 예로 2007년 인권위는 성 소수자 차별에 대한 언론 보도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보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예 언론이 성 소수자 문제의 기사화를 회피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권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필요하다.



## ❖ 시선 8 \_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일상화된 요즘, 숙련공이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갖은 차별을 당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설움을 그린 <나 어떡해>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이 영화가 제작되던 2005년은 비정규직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났던 시기. 2006년 12월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되면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제도도 마련되었다. 물론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변칙적 방법을 쓰면 고용 보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권익 보호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고, 기존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남규선 팀장은 "<나 어떡해>가 보여주는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권 문제다. 사회 각계의 지혜와 대중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인권 퇴행을 우려했다.

## ㉠ 2009년 <시선 1318>\_질풍노도의 시기에든 인권은 필요해요

<시선 1318>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한다. 바로 청소년의 인권 문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인권 사각지대에 청소년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청소년의 권리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며 유보된다. 누구나 다 거치는 시기인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 문제는 의외로 심각한 데 비해 해결책도 별로 없다. 아예 문제라는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이다.

<시선 1318>은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깁 세대'인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방은진 전계수 이현승 윤성호 김태용 감독은 이번 영화를 위해 청소년의 삶 속으로 직접 뛰어 들었다. 오랜 시간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청소년을 만나 인터뷰하고, 전문 배우가 아닌 진짜 청소년들을 영화 속으로 불러들이면서 1318 세대의 가슴 속 희망과 꿈에 귀 기울인 것. 그 결과 나온 5편의 영화는 생생한 청소년의 삶과 고민을 담아낸다.



2009\_시선 1318\_<진주는 공부중>

<진주는 공부중> 두 명의 진주가 펼치는 흥겨운 뮤지컬

이 학교엔 두 명의 아주 다른 '진주'가 있다. 전교 1등을 밥먹듯이 하는 모범생 박진주(남지현)와 전교 꼴등을 놓치지 않는 말쑥꾸러기 마진주(정지안). 전혀 어울리지 않

을 것 같은 두 친구가 만난 곳은 뜻밖에도 병원이다. 열심히 공부를 하던 박진주가 글자와 숫자가 책에서 빠져나와 방안을 가득 채우는 환영을 본 것. 결국 병원에 입원한 박진주는 병원에서,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마진주를 만나고, 두 사람은 학교 선생님들을 골탕 먹인 작전을 짠다. <오로라 공주>의 방은진 감독은 오랜 취재를 통해 쓴 시나리오에 춤과 노래를 입혀 흥겨운 뮤지컬을 완성했다.

#### Director's Comment\_방은진 감독

"망설였다. 그리고 고민했다. '청소년'이라는 정의도 애매했지만, 이미 기성 세대의 옷을 입은 나로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극단적인 두 아이를 대비시킨 것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 진주를 통해 요즘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다. 그들은 정녕 스스로 원해서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인지, 더불어 이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존재하는지 묻고 싶었다.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9\_시선 1318\_<유.앤.미>

<유.앤.미>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혼돈기의 아이들

역도 선수가 꿈인 소영(권은수)은 오늘도 학급의 '힘 쓰는 일'을 도맡아 하고, 내성적인 철구(황건희)는 교실 한 구석에서 책상에 구멍을 내는 일에 열중한다. 소영은 이제

겨우 중학생이지만, 역도 외엔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없을 절박한 심정. 철구는 엄마(오지혜)의 강요에 의해 역지로 외국 유학을 떠나기가 두렵다. 아이도 아니지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 나이. 뚜렷한 꿈이 있는데도, 두 아이는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없어 괴롭기만 하다.

**Director's Comment\_전계수 감독**

"나는 아이들의 이성이 마비된 순응적 삶, 부모와 학교의 지나친 간섭 혹은 그와 마찬가지로 태도인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어찌면 똑같이 멍청한 성장기를 거쳤던 어른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관성적이며 체념적 태도다. 아이들도 그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 나는 다만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느끼는 자연스럽고 슬픈 혼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2009\_시선 1318\_<릴레이>  
**<릴레이> 소녀 엄마들과 아기 바꾸니**

희수(박보영)과 단짠 친구 규리(손은서)의 등교 시간은 거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다. 교문을 지키는 선생님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도, 큰 가방을 학교에 가져가기 위해서도. 그 가방 안에는 갓난아이가 있다. 희수와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도 돌아가며 아기를 돌보고, 쉬는 시간에도 돌아가며 우유를 먹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과연 아이는 엄마는 누구일까? 하지만 소녀 엄마들과 아기의 단란한 시간은 교실에 들이닥친 선생님 때문에 깨진다.

### Director's Comment\_이현승 감독

"청소년 비혼모의 학습권을 주제로 했는데, 10대 비혼모는 시사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주로 다뤄왔기 때문에 자칫 진부하거나 딱딱해지지 않도록 시나리오 과정부터 신경을 썼다. 공익성이 강조된 나머지 계도적인 영화가 되지 않도록, 하루 동안 벌어지는 소동극 코미디형식을 활용했다. 자칫 우울할 수 있는 소재지만 경쾌하게 그려내고 싶었다. 코미디 영화인만큼 현장은 항상 즐거웠다. 바쁜 현장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들에게 감사한다."



2009\_시선 1318\_<청소년 드라마의 이해와 실제>  
<청소년 드라마의 이해와 실제> '예비 88만원 세대'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 둔 어느 날, 횡한 공터에 아이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무료한 듯 별 의미 없는 게임을 주고받고, 어떤 아이들은 티격태격 싸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능력 없는 20대보다는 자기가 더 호감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남학생과, 변태라고 구박하는 여학생도 있다. 한 구석에는 소곤소곤 서로의 꿈을 나누는 여학생들이 있고, 그들 사이를 빨간 코트를 입은 여학생이 돌아다닌다. 이들이 사는 이곳은 어디일까?

### Director's Comment\_윤성호 감독

"지금의 청소년 문제는 특정한 세대나 계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를 유예하고,

합리성을 도외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제의 신화만 좇는, 대한민국 기성 세대의 문제다. 대선 투표가 진행되는 건물 앞에서 엄마와 딸이 대화를 나눈다. 딸에게 누굴 뽑을지 물어보는 엄마에게, 딸은 결국 대통령이 된 이의 이름을 대면서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그 사람이 이길 것 같잖아. 이길 사람을 뽑으면 좋은 거잖아.' 한국의 많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그렇게 의식 없는 서사를 선택했고, 그 어른들을 존경해본 적도 없으면서 대안 없이 닳아 가는 청소년들 역시 그 뻔한 서사를 선택한다. 쉽게 말하면 상자가 썩으니까 사과도 썩는 것이다. 이 단편은, 그런 '예비 88만원 세대'에 관한 날것의 몽타주다."



2009\_시선 1318\_<달리는 차은>  
 <달리는 차은> 행복한 다문화 가정

갈대가 하늘하늘 흔들리는 독길을 차은이(전수영)가 달리고 자전거를 탄 영찬이가 뒤따른다. 은근히 장난을 걸어오는 모습이 차은을 좋아하는 거 같다. 달리는 걸 좋아하는 차은이는 재능 있는 육상부 선수. 하지만 육상부가 없어지고 육상부 아이들은 도시로 전학을 간다고 하자 걱정이 앞선다. 차은이도 전학을 가고 싶지만, 아빠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아빠와 재혼한 필리핀 새엄마도 차은의 고민 중 하나다. 아빠와 엄마, 누구와도 소통이 힘든 차은은 결국 집을 뛰쳐나가고, 차은을 걱정하며 함께 집을 나온 엄마와 짝고도 행복한 여행을 시작한다.

### Director's Comment\_김태용 감독

"제목에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한 소녀의 달리는 이미지로부터 시작했다. 불안과 먹먹함으로부터 탈출하듯 시원하게 달리는 그녀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전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우리 사회는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다문화 가정 안에서 키 가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이 영화를 통해 보다 많은 아이들과 소통의 끈이 생기길 기대한다."

[출처] 네이버 스페셜무비 에디션 (09.06.18)|작성자 dreaming1318



## 인권 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집필기준 설명회

---

발행일 : 2009년 6월 25일

발행인 : 안 경 환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872 팩스 (02)2125-9878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humanrgihts.go.kr>

인쇄처 : 리드릭(주) 전화 / (02)2269-1919(代)